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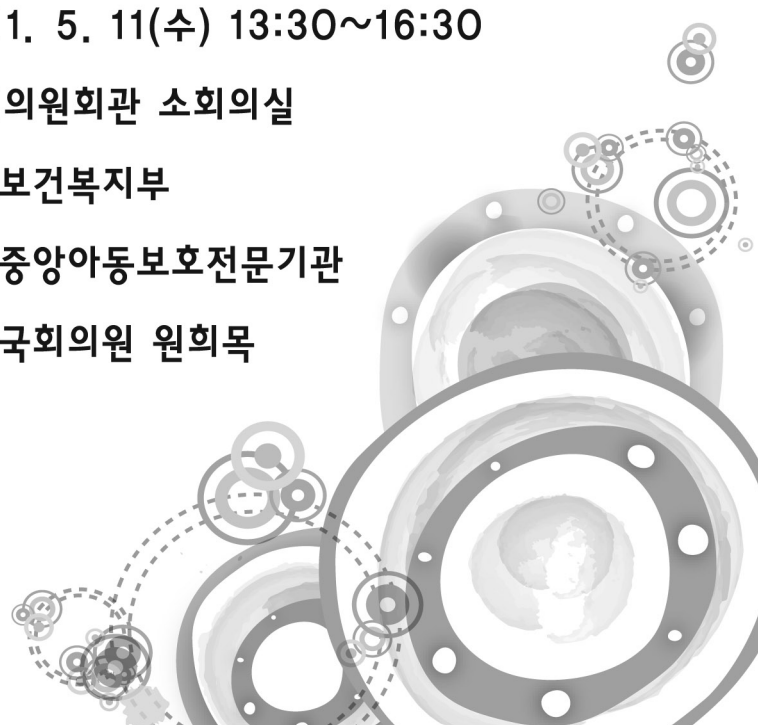


# 아동학대예방사업의 지나온 10년, 나아갈 10년

- 일 시 : 2011. 5. 11(수) 13:30~16:3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주 최 :  보건복지부
  - 주 관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후 원 :  국회의원 원희목
- 



## 세미나 일정



13:00-13:30 [접수]

13:30-13:50 [개회]

인사말 : 박용주 실장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축사 : 원희목 의원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좌장: 신혜령 교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13:50-14:20 [주제발표1] 2001-2010년 주요 통계로 보는 아동학대 현황  
장화정 관장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14:20-14:50 [주제발표2] 아동보호서비스의 발전방향 모색:  
**예방과 치료의 균형적 접근**  
윤혜미 교수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14:50-15:10 [휴식]

15:10-16:00 [토론]

나성웅 과장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김정민 판사 (서울가정법원)

황옥경 교수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조운영 관장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16:00-16:30 [질의응답]

[폐회]



# 목 차



□ 2001-2010년 주요 통계로 보는 아동학대 현황 .....	7
장화정 관장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보호서비스의 발전방향 모색: 예방과 치료의 균형적 접근 .....	37
윤혜미 교수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 토론문 .....	57
<b>아동학대예방정책의 방향</b>	
나성웅 과장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	59
<b>학대아동 예방과 보호절차의 개선 방향</b>	
김정민 판사 (서울가정법원) .....	61
<b>우리나라 아동보호정책, 어디까지 와 있는가?</b>	
황옥경 교수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	69
<b>아동학대예방과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중심의 역할제고</b>	
조윤영 관장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	77





2001-2010년  
주요 통계로 보는  
아동학대 현황

장화정 관장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2001-2010년 주요 통계로 보는 아동학대 현황

장화정 관장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I. 들어가며

2011년 2월 보도된 '서울 광진구 3세 아동 사망사건'은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3살배기 자녀가 자신의 핏줄인지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아버지는 폭행과 학대를 일삼았다. 고통 속에서 비명과 울음으로 호소했지만, 그 고통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이 비참히 삶을 마감해야 했다. 비정한 아버지는 학대로 사망한 아동을 쓰레기 더미에 유기하였고, 한 달가량이 지나서야 행인에 의해 발견되었다. 혹자는 아동의 몸에 든 멍을 기억하였고, 밤새 계속되던 아동의 울음소리도 회자했지만 아무도 그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가지거나, 아동학대를 의심하여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알릴 생각을 하지 못했다. 최근 법원의 판결에서는 비정한 친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는 것으로 그치고 말았는데, 결국 이번 사건은 우리사회 아동학대의 실태와 사회적인 인식수준을 잘 보여준 단적인 실례라 하겠다.

우리나라는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과 더불어 국가적 차원의 아동학대예방사업을 기반을 마련하였고, 전국 광역시·도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다. 2000년 개소 당시 전국 광역시 및 도에서 17개소로 운영되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현재는 45개소(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포함)로 확대 설치·운영되고 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동학대신고전화 운영 및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피해아동에 대한 격리보호, 응급치료 및 심리치료, 학대행위자 및 가족에 대한 서비스 등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직접서비스와 신고의무자, 아동 및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지원, 상담원 보수교육, 전산시스템 구축, 아동학대예방정책의 개발,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아동학대예방 홍보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매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이 보고서에는 우리나라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및 학대 유형, 신고자 유형 등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전반적인 현황이 담겨있다. 지금부터 2010년 주요현황과 연도별 주요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대피해아동 보호의 현 주소를 확인하고 더 나아가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 II. 연도별 아동학대예방사업 주요 현황

### 1. 연도별 상담신고 접수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접수된 총 건수는 74,684건이며 10년간 아동학대의심사례건수는 55,243건에 이른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신고 접수 건수는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2001년 4,133건에 비해 2010년 신고건수는 9,199건으로 약 2.2배 증가하였다. 특히 2004년에는 전년 대비 증가율이 40.4%로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나 2009년부터는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동학대의심사례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01년보다 2010년에 약 2.8배 증가하였다. 아동학대의심사례 건수가 전체 상담신고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높아지고 일반상담 건수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표 1〉 연도별 상담신고 접수 건수

(단위: 건, %)

구분 \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아동학대 의심사례	2,606 (63.1)	2,946 (71.7)	3,536 (71.0)	4,880 (69.7)	5,761 (72.0)	6,452 (72.5)	7,083 (74.7)	7,219 (75.4)	7,354 (79.0)	7,406 (80.5)	55,243 (73.0)
아동학대의심 사례 외	1,527 (36.9)	1,165 (28.3)	1,447 (29.0)	2,118 (30.3)	2,239 (28.0)	2,451 (27.5)	2,395 (25.3)	2,351 (24.6)	1,955 (21.0)	1,793 (19.5)	19,441 (28.9)
계	4,133 (100.0)	4,111 (100.0)	4,983 (100.0)	6,998 (100.0)	8,000 (100.0)	8,903 (100.0)	9,478 (100.0)	9,570 (100.0)	9,309 (100.0)	9,199 (100.0)	74,684 (100.0)
전년대비 증가율	-	-0.5	21.2	40.4	14.3	11.3	6.5	1.0	-2.7	-1.2	

## 2. 연도별 재신고 접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사례 중 〈표 2〉는 연도별 재신고 사례 발생건수를 보여주고 있다. 10년간 총 6,332건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재신고되었다. 2001년 20건의 재신고로 시작하여 2010년까지 1,262건으로 증가하여 전체 상담신고건수 대비 재신고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표 2〉 연도별 상담신고 접수 건수 대비 재신고율

(단위: 건, %)

구분 \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상담신고건수	4,133	4,111	4,983	6,998	8,000	8,903	9,478	9,570	9,309	9,199
재신고 건수	20	103	136	533	573	684	957	930	1,134	1,262
상담신고건수대비 재신고율	0.5	2.5	2.7	7.6	7.2	7.7	10.1	9.7	12.2	13.7

### 3. 연도별 신고자 유형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총 16,836건이며 2001년에 비해 2010년도에 3.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 신고건수와 대비하였을 때는 평균 29.9%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표 3〉).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고의무자 중에서는 교원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신고율이 해마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2010년의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신고비율이 10.6%, 교원이 7.2%로 2009년에 비해 2.7%, 0.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비신고의무자 유형에서는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부모, 이웃·친구의 신고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별히 사회복지관련 종사자의 경우 2002년 90건의 신고가 이루어졌으나 2010년의 경우 1,562건의 신고가 이루어져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경찰의 경우 2010년 4.1%의 신고비율을 보여 2009년 5.7%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경찰에 신고되는 아동 성폭력, 가정폭력,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등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교차신고 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협력 및 연계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표 3〉 연도별 신고자 유형

(단위: 건, %)

신고자 유형	년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시설종사자*	285 (10.9)	238 (8.1)	181 (5.1)	226 (4.7)	222 (3.8)	217 (3.3)	374 (5.3)	426 (5.9)	-	-	2,169 (5.9)
이동복지시설 종사자									358 ( 4.9)	425 ( 5.7)	783 (5.3)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15 ( 0.2)	26 ( 0.4)	41 (0.3)
보육시설 종사자									76 ( 1.0)	152 ( 2.1)	228 (1.6)
유치원 종사자									43 ( 0.6)	66 ( 0.9)	109 (0.8)
성매매지원시설 및 피해상담소 종사자									41 ( 0.6)	47 ( 0.6)	88 (0.6)
한부모가족복지 상담소 및 시설 종사자									15 ( 0.2)	7 ( 0.1)	22 (0.2)
가정폭력상담소 및 시설 종사자									142 ( 1.9)	141 ( 1.9)	283 (1.9)
교원	134 ( 5.1)	149 ( 5.0)	190 ( 5.4)	280 ( 5.7)	431 ( 7.5)	611 ( 9.5)	771 (10.9)	887 (12.3)	547 (7.4)	535 ( 7.2)	3,648 (7.6)
의료인	51 ( 2.0)	59 ( 2.0)	83 ( 2.3)	102 ( 2.1)	126 ( 2.2)	114 ( 1.8)	157 ( 2.2)	105 (1.5)	98 (1.3)	83 ( 1.1)	978 (1.9)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	-	1 ( 0.0)	15 ( 0.3)	23 ( 0.4)	32 ( 0.5)	26 ( 0.4)	24 ( 0.3)	18 ( 0.2)	16 ( 0.2)	155 (0.3)
소방구급대원	-	-	-	-	-	-	3 ( 0.0)	6 ( 0.1)	11 ( 0.2)	6 ( 0.1)	26 (0.1)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216 ( 8.3)	392 (13.3)	575 (16.3)	738 (15.1)	805 (14.0)	1,038 (16.1)	953 (13.4)	941 (13.0)	975 (13.3)	786 (10.6)	7,419 (13.3)
소 계	686 (26.3)	838 (28.4)	1,030 (29.1)	1,361 (27.9)	1,607 (27.9)	2,012 (31.2)	2,284 (32.2)	2,389 (33.1)	2,339 (31.8)	2,290 (30.9)	16,836 (29.9)

(계속)

신고자 유형		년도										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비 신 고 의 무 자	부 모	772 (29.6)	591 (20.1)	673 (19.0)	990 (20.3)	1,073 (18.6)	1,165 (18.1)	1,294 (18.3)	1,311 (18.2)	1,356 (18.4)	1,374 (18.6)	10,599 (19.9)
	이웃친구	685 (26.3)	757 (25.7)	843 (23.8)	921 (18.9)	933 (16.2)	886 (13.7)	856 (12.1)	845 (11.7)	805 (10.9)	861 (11.6)	8,392 (17.1)
	친인척	241 (9.3)	242 (8.2)	367 (10.4)	373 (7.6)	481 ( 8.3)	500 ( 7.7)	471 ( 6.7)	502 ( 6.9)	468 (6.4)	488 (6.6)	4,133 (7.8)
	경 찰	104 (4.0)	164 (5.6)	221 (6.3)	338 (6.9)	357 ( 6.2)	340 ( 5.3)	275 (3.9)	322 ( 4.5)	416 (5.7)	302 (4.1)	2,839 (5.3)
	종교인	-	36 (1.2)	49 (1.4)	47 (1.0)	74 ( 1.3)	99 (1.5)	77 (1.1)	54 (0.7)	54 (0.7)	54 ( 0.7)	544 (1.1)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	90 (3.0)	114 (3.2)	506 (10.4)	823 (14.3)	980 (15.2)	1,165 (16.5)	1,176 (16.3)	1,356 (18.4)	1,562 (21.1)	7,772 (13.2)
	낯선사람	-	-	4 (0.1)	114 (2.3)	80 (1.4)	148 (2.3)	88 (1.2)	70 (1.0)	71 (1.0)	69 ( 0.9)	644 (1.3)
	아동본인	40 (1.5)	56 (1.9)	52 (1.5)	65 (1.3)	80 (1.4)	71 (1.1)	50 (0.7)	73 (1.0)	88 (1.2)	115 (1.6)	690 (1.3)
	익 명	-	11 (0.4)	13 (0.4)	13 (0.3)	41 (0.7)	26 (0.4)	11 (0.1)	61 (0.8)	8 (0.1)	6 (0.1)	190 (0.4)
	형제,자매	-	-	-	-	-	-	-	-	34 (0.5)	44 (0.6)	78 (0.6)
	기 타	78 (3.0)	161 (5.5)	170 (4.8)	152 (3.1)	212 (3.7)	225 (3.5)	512 (7.2)	416 (5.8)	359 (4.9)	241 (3.2)	2,526 (4.8)
	소 계	1,920 (73.7)	2,108 (71.6)	2,506 (70.9)	3,519 (72.1)	4,154 (72.1)	4,440 (68.8)	4,799 (67.8)	4,830 (66.9)	5,015 (68.2)	5,116 (69.1)	38,407 (70.1)
계	2,606 (100.0)	2,946 (100.0)	3,536 (100.0)	4,880 (100.0)	5,761 (100.0)	6,452 (100.0)	7,083 (100.0)	7,219 (100.0)	7,354 (100.0)	7,406 (100.0)	55,243 (100.0)	

\* 2009년부터 시설종사자 항목은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성매매지원시설 및 피해상담소 종사자,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및 시설 종사자, 가정폭력상담소 및 시설 종사자로 구분하여 집계하였으며, 유치원 종사자 항목을 신설함.

## 4. 연도별 학대피해아동 보호 현황

연도별 학대피해아동 보호현황을 살펴본 결과 <표 4>에서 보듯이 지난 10년간 총 43,731 명의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2001년 2,105건에서 2010년 5,657건으로 지난 10년 동안 2.7배 늘어났다. 이와 같은 원인으로는 2001년 17개소에 불과하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2010년 44개소로 증설되어 아동학대 발생가정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더 많은 학대피해아동을 발견하고 보호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증가율을 살펴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증설 수와 함께 아동학대사례 증가율도 정비례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4> 연도별 아동학대사례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단위: 건, %, 개소)

년 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아동학대 사례건수	건수	2,105	2,478	2,921	3,891	4,633	5,202	5,581	5,578	5,685	5,657	43,731
	증가율	-	17.7	17.9	33.2	19.1	12.3	7.3	-0.1	1.9	-0.5	
아동보호 전문기관 설치수	기관수	17	17	19	37	38	42	43	43	44	44	44
	증가 기관수		-	2	18	1	4	1	-	1	-	

## 5. 연도별 학대피해아동 보호율

연도별 추계아동인구(만 0~17세)수를 기준으로 아동인구 천 명당 학대피해아동 보호율을 비교하여 보았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1년 11,872,394 명의 아동인구가 2010년 9,976,186명으로 크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인구수 대비 아동학대사례비율을 산출한 학대피해아동 보호율은 2001년 0.18%에서 2010년 0.57%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표 5〉 연도별 학대피해아동 보호율

(단위: 명, 건, %)

구분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추계아동 인구 (만0-17세)		11,872,394	11,665,981	11,478,537	11,297,516	11,105,069	10,903,869	10,704,846	10,490,534	10,247,497	9,976,186
아동학대사례건수		2,105	2,478	2,921	3,891	4,633	5,202	5,581	5,578	5,685	5,657
학대피해 아동 보호율		0.18	0.21	0.25	0.34	0.42	0.48	0.52	0.53	0.55	0.57

\* 통계청(www.kosis.kr), 2001-2010년 추계인구 자료 참조

### III. 2010년 아동학대 주요 현황

#### 1. 상담신고 접수

2010년 한 해 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접수된 상담신고 건수는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9,199건이다. 이 중 아동학대의심사례건수는 7,406건으로 전체 신고접수의 80.5%를 차지하였고, 중복신고는 89건으로 1.0%를 차지하였으며, 일반상담은 1,704건으로 18.5%에 해당하였다.

〈표 6〉 상담신고 접수 건수

(단위: 건, %)

아동학대의심사례			중복신고	일반상담	계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아동학대의심사례	소계			
893(9.7)	6,513(70.8)	7,406(80.5)	89(1.0)	1,704(18.5)	9,199(100.0)

#### 2. 사례판정

아동학대의심사례는 아동학대사례, 잠재위험사례, 일반사례로 판정된다. 〈표 7〉에서 전체 사례판정 결과를 살펴보면, 아동학대의심사례 7,406건 중 아동학대로 판정된 아동학대사례



는 5,657건으로 전체 아동학대의심사례의 76.4%를 차지하였고, 잠재위험사례는 506건으로 6.8%, 일반사례는 1,243건으로 16.8%로 나타났다.

〈표 7〉 사례판정 결과

(단위: 건, %)

아동학대사례	잠재위험사례	일반사례	계
5,657(76.4)	506(6.8)	1,243(16.8)	7,406(100.0)

### 3. 학대피해아동

#### 가. 학대피해아동 성별 및 연령

아동학대사례로 판정된 5,657건의 학대피해아동 성별은 〈표 8〉와 같이 여아가 2,847건 (50.3%), 남아가 2,810건(49.7%)으로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대피해아동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고학년에 해당하는 만 10~12세가 1,449건(25.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중학생에 해당하는 만 13~15세가 1,272건 (22.5%), 초등학교 저학년에 해당하는 만 7~9세가 1,082건(19.1%) 순으로 나타났다.

〈표 8〉 학대피해아동 성별 및 연령

(단위: 건, %)

성별 및 연령(만)		건수
성별	남	2,810 (49.7)
	여	2,847 (50.3)
연령 (만)	1세미만	167 ( 3.0)
	1~3세	567 (10.0)
	4~6세	715 (12.6)
	7~9세	1,082 (19.1)
	10~12세	1,449 (25.6)
	13~15세	1,272 (22.5)
	16~18세	405 ( 7.2)
계		5,657 (100.0)

## 나. 학대피해아동 가족유형

학대피해아동 가족유형을 크게 구분하여 보면 <표 9>와 같이 친부모가족 1,654건(29.2%), 친부모가족외 형태 3,678건(65.0%), 대리양육형태 236건(4.2%)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학대피해아동 가족유형 중에서는 부자가정이 1,684건(29.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친부모가족과 모자가정이 각각 1,654건(29.2%), 881건(15.6%)으로 많았다.

부자가정과 모자가정, 그리고 미혼부가정, 미혼모가정을 합하면 2,715건으로 전체 학대피해아동 가족의 48.0%가 한부모 가정임을 알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2010년 전체 추계가구 중 한부모 가정이 약 8.7%의 비중을 차지<sup>1)</sup>하는 반면, 아동학대사례가 한부모 가정에서 과반수 가량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친부모가족에 비해 한부모 가정의 아동학대 발생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뜻한다. 이외에도 낮은 수치이기는 하지만 가정 위탁, 입양가정, 시설보호와 같은 아동보호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대리양육형태에서 236건(4.2%)의 아동학대가 발생하였다.

<표 9> 학대피해아동 가족유형

(단위: 건, %)

친부모 가족	친부모가족 외 형태								대리양육형태				기타	파악 안됨	계
	부자 가정	모자 가정	미혼 부·모 가정	재혼 가정	친인척 보호	동거 (사실혼 포함)	소년 소년 가정	소계	가정 위탁	입양 가정	시설 보호	소계			
1,654 (29.2)	1,684 (29.8)	881 (15.6)	150 (2.6)	380 (6.7)	303 (5.3)	252 (4.5)	28 (0.5)	3,678 (65.0)	15 (0.3)	25 (0.4)	196 (3.5)	236 (4.2)	68 (1.2)	21 (0.4)	5,657 (100.0)

## 다. 학대피해아동 특성

학대를 경험한 아동들에게서 나타나는 주된 특성은 <표 10>에 보는 바와 같이 반항·충동·공격성, 거짓말, 도벽 등과 같은 적응·행동 특성으로 전체의 37.3%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주의산만, 과잉행동, 오락중독 등과 같은 정서·정신건강 특성이 36.2%로 많은 비중을 차지

1)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2010년 가구구성/가구원수별 추계가구-전국

하였다.

구체적 특성을 살펴보면, 적응·행동 특성에서는 학습문제가 836건(6.2%), 학교 부적응이 723건(5.3%), 반항·충동·공격성이 695건(5.1%), 거짓말이 569건(4.2%)으로 높게 나타났고, 정서·정신건강 특성에서는 불안이 1,142건(8.4%), 주의산만이 726건(5.4%), 낮은 자아존중감이 523건(3.9%)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위생문제 565건(4.2%), 언어문제 360건(2.7%), 신체발달지연 192건(1.4%) 등 발달·신체건강 특성이 1,410건으로 전체 학대피해아동 특성 중 10.4%를 차지하였고, 시각·청각장애, 지적장애 등 장애 특성이 256건으로 전체의 1.9%에 해당하였다.

〈표 10〉 학대피해아동 특성(중복포함)

(단위: 건, %)

특성		건수
장애	시각장애	3 ( 0.0)
	청각장애	2 ( 0.0)
	지체장애	23 ( 0.2)
	지적 장애	171 ( 1.3)
	지폐성장장애	15 ( 0.1)
	언어장애	20 ( 0.1)
	뇌병변장애	20 ( 0.1)
	기타장애	2 ( 0.0)
	소계	256 ( 1.9)
정서·정신건강	주의산만	726 ( 5.4)
	과잉행동	354 ( 2.6)
	오락중독	82 ( 0.6)
	인터넷중독	131 ( 1.0)
	정서문제	0 ( 0.0)
	불안	1,142 ( 8.4)
	애착문제	504 ( 3.7)
	무력감	491 ( 3.6)
	우울	467 ( 3.4)
	낮은 자아존중감	523 ( 3.9)
	성격 및 기질문제	326 ( 2.4)
	탐식 및 결식	161 ( 1.2)
	소계	4,907 ( 36.2)
적응 행동	반항, 충동, 공격성	695 ( 5.1)
	거짓말	569 ( 4.2)
	도벽	400 ( 3.0)
	가출	544 ( 4.0)
	약물·흡연·음주	357 ( 2.6)
	성문제	161 ( 1.2)
	학교 부적응	723 ( 5.3)
	사회성문제	0 ( 0.0)
	잦은결석	402 ( 3.0)
	늦은귀가	371 ( 2.7)
	학습문제	836 ( 6.2)
		소계
발달·신체건강	신체발달지연	192 ( 1.4)
	언어문제	360 ( 2.7)
	급만성질병	67 ( 0.5)
	영양결핍	102 ( 0.8)
	대소변문제	124 ( 0.9)
	위생문제	565 ( 4.2)
		소계
	특성없음	1,294 ( 9.6)
	기타	627 ( 4.6)
	계	13,552 (100.0)

## 4. 학대행위자

### 가.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

학대행위자의 성별 및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 11>과 같다. 학대행위자 성별 분포는 남성이 3,375건(59.7%), 여성이 2,272건(40.1%)으로 나타나 남성이 여성보다 약 1.5배 많았다. 학대행위자 연령 분포는 만 40~49세가 2,524건(44.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만 30~39세가 1,713건(30.3%)으로 많았다.

앞서 학대피해아동의 연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아동들의 피해가 많았던 것과 일맥상통하게(<표 8> 참조), 학대행위자는 30~40대의 학령기 자녀를 둔 학부모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

(단위: 건, %)

성별 및 연령		건수
성별	남	3,375 (59.7)
	여	2,272 (40.1)
	미 상	10 ( 0.2)
연령	19세 이하	22 ( 0.4)
	20~29세	405 ( 7.2)
	30~39세	1,713 (30.3)
	40~49세	2,524 (44.6)
	50~59세	616 (10.9)
	60~69세	193 ( 3.4)
	70세 이상	75 ( 1.3)
	파악안됨	109 ( 1.9)
계		5,657 (100.0)

### 나.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아동과의 관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아동과의 관계를 <표 12>에서와 같이 부모, 친인척, 타인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아동학대사례 5,657건 가운데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는 4,709건으로 전체의 83.2%를 차지하였고, 타인이 534건으로 9.4%, 친인척이 337건으로 6.0%, 기타가 70건으로 1.2%에

해당하였다. 2010년 발생한 아동학대사례 10건 중 8건 이상이 부모에 의해 발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아동과의 관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친부가 2,797건(49.4%)으로 가장 많았고, 친모가 1,708건(30.2%)으로 많았다. 결국, 친부모에 의한 학대는 총 4,505건으로 전체의 79.6%를 차지하였다.

이외에도 낮은 수치이기는 하지만 시설종사자가 229건(4.0%), 친인척이 144건(2.5%), 친조모가 100건(1.8%)으로 집계되었다.

〈표 12〉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아동과의 관계

		(단위: 건, %)
관 계		건 수
부모	친부	2,797 (49.4)
	친모	1,708 (30.2)
	계부	75 ( 1.3)
	계모	105 ( 1.9)
	양부	11 ( 0.2)
	양모	13 ( 0.2)
	소계	4,709 (83.2)
친인척	친조부	46 ( 0.8)
	친조모	100 ( 1.8)
	외조부	15 ( 0.3)
	외조모	21 ( 0.4)
	친인척	144 ( 2.5)
	형제,자매	11 ( 0.2)
	소계	337 ( 6.0)
타인	부,모의 동거인	82 ( 1.4)
	교원	83 ( 1.5)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17 ( 0.3)
	시설종사자	229 ( 4.0)
	이웃	62 ( 1.1)
	낯선사람	53 ( 0.9)
	위탁부	3 ( 0.1)
	위탁모	5 ( 0.1)
	소계	534 ( 9.4)
	기타	70 ( 1.2)
파악안됨	7 ( 0.2)	
계	5,657 (100.0)	

## 다. 학대행위자 특성

학대행위자 특성을 <표 13>에서 살펴본 결과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특성은 양육태도 및 방법부족으로 31.3%의 분포를 보였고, 다음으로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이 23.7%, 중독 및 질환문제가 14.1%, 그리고 가족종교문제가 10.6% 순으로 나타났다.

**<표 13> 학대행위자 특성(중복응답)**

(단위: 건, %)

특 성	건 수
양육태도 및 방법부족	5,932 (31.3)
중독 및 질환문제	2,680 (14.1)
성격 및 기질문제	1,724 ( 9.1)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4,494 (23.7)
어릴 적 학대경험 및 폭력성	1,279 ( 6.7)
성문제	198 ( 1.0)
원치 않는 아이	144 ( 0.8)
가족종교문제	2,018 (10.6)
특성없음	104 ( 0.5)
기타	239 ( 1.3)
파악안됨	167 ( 0.9)
계	18,979(100.0)

## 5. 아동학대사례 발생 현황

### 가. 아동학대 발생장소

아동학대 발생장소를 살펴본 결과 <표 14>에서 보듯이 가정 내(87.9%)에서 아동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근처 또는 길가가 158건(2.8%), 복지시설이 127건(2.2%), 어린이집 100건(1.8%), 친척집 50건(0.9%), 학교 37건(0.6), 이웃집 36건(0.6%)의 순으로 아동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14〉 아동학대 발생장소

(단위 : 건, %)

발생장소	건 수
가정 내	4,972 (87.9)
집근처 또는 길가	158 ( 2.8)
친척집	50 ( 0.9)
이웃집	36 ( 0.6)
어린이집	100 ( 1.8)
유치원	19 ( 0.3)
학교	37 ( 0.6)
학원	15 ( 0.3)
병원	21 ( 0.4)
복지시설	127 ( 2.2)
기타	111 ( 2.0)
파악안됨	11 ( 0.2)
계	5,657(100.0)

#### 나. 아동학대 발생빈도

아동학대의 발생빈도는 다음 〈표 15〉과 같다. 2010년 전체 아동학대사례 중 거의 매일 발생한 경우가 2,320건으로 전체의 41.0%를 차지하였고, 2~3일에 한번 발생한 경우가 1,081건으로 19.1%에 해당하였다. 거의 매일 혹은 2~3일에 한번 꼴로 빈번히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전체 사례 중에 60.1%에 해당하였으며 이들은 반복적인 아동학대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아동학대 발생빈도

(단위: 건, %)

발생장소	건 수
거의 매일	2,320 (41.0)
2~3일에 한번	1,081 (19.1)
일주일에 한번	689 (12.2)
2주일에 한번	275 ( 4.8)
1개월에 한번	345 ( 6.1)
2~3개월에 한번	258 ( 4.6)
6개월에 한번	106 ( 1.9)
1년에 한번	51 ( 0.9)
일회성	532 ( 9.4)
계	5,657(100.0)



## 다. 아동학대사례 유형

### (1) 아동학대사례 유형 I ('중복학대' 유형 별도분류)

아동학대사례 유형 I 에서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기와 중복학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표 16>에 따르면, 중복학대가 2,394건(42.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방임이 1,870건(33.1%)으로 많았으며, 정서학대 773건(13.7%), 신체학대 348건(6.1%), 성학대 258건(4.6%), 유기 14건(0.2%) 순으로 나타났다.

<표 16> 아동학대사례 유형 I ('중복학대' 유형 별도분류)

(단위: 건, %)

유 형		건수
	신체학대	348 ( 6.1)
	정서학대	773 (13.7)
	성학대	258 ( 4.6)
	방임	1,870 (33.1)
	유기	14 ( 0.2)
중복학대	신체학대·정서학대	1,303 (23.0)
	신체학대·성학대	17 ( 0.3)
	신체학대·방임	128 ( 2.2)
	신체학대·유기	3 ( 0.1)
	정서학대·성학대	29 ( 0.5)
	정서학대·방임	477 ( 8.4)
	정서학대·유기	2 ( 0.0)
	성학대·방임	28 ( 0.5)
	방임·유기	10 ( 0.2)
	신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	32 ( 0.6)
	신체학대·정서학대·방임	326 ( 5.8)
	신체학대·성학대·방임	2 ( 0.0)
	신체학대·방임·유기	3 ( 0.1)
	정서학대·성학대·방임	12 ( 0.2)
	신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방임	22 ( 0.4)
소계	2,394 (42.3)	
계	5,657 (100.0)	

### (2) 아동학대사례 유형 II ('중복학대' 유형 미분류)

아동학대사례 유형 II는 중복학대를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각각의 학대유형에 포함시켜 살펴본 결과 <표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아동학대사례 유형의 누계는 8,466건에 달하였다. 이 가운데 정서학대가 2,974건(35.1%)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방임이 2,878건(34.0%)으로 많았으며, 신체학대 2,182건(25.8%), 성학대 400건(4.7%), 유기 32건(0.4%)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사례 유형 I 과 II를 비교해서 살펴보면, 중복학대 유형을 별도로 분류했을 때보

다 신체학대와 정서학대의 비율이 25.8%, 35.1%로 월등히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신체학대나 정서학대가 다른 학대 유형과 동반하여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성학대는 아동학대사례 유형 I 과 II에서 각각 4.6%, 4.7%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처럼 성학대 비율이 낮은 것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성학대의 폐쇄적 특성과 함께 성학대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외의 다른 기관에서도 개입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17〉 아동학대사례 유형 II(‘중복학대’유형 미분류)

(단위: 건, %)

유형	건수
신체학대	2,182 (25.8)
정서학대	2,974 (35.1)
성학대	400 ( 4.7)
방임	2,878 (34.0)
유기	32 ( 0.4)
계	8,466 (100.0)

## 6. 아동학대사례 조치 결과

### 가. 학대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학대피해아동에게 취해진 초기조치결과는 〈표 18〉과 같다. 전체 아동학대사례 5,657건 중에서 원가정에 아동이 보호된 경우는 4,108건으로 전체의 72.6%에 해당하였고, 격리보호된 아동의 경우는 1,500건으로 전체의 26.5%로 파악되었다. 이외에도 초기에 아동이 사망한 경우가 1건(0.1%), 적절한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타기관으로 의뢰한 경우가 48건(0.8%)으로 나타났다.

격리보호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대비 일시보호가 916건(16.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친족(친인척)보호가 266건(4.7%), 장기보호조치가 163건(2.9%), 기타 155건(2.7%), 가정위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위탁은 피해아동 특성에 맞는 위탁가정선정까지 일정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기조치과정에서는 취해지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된다.

〈표 18〉 학대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단위: 건, %)

원기정 보호	격리보호						사망	타기관 의뢰	계
	친족 (친인척) 보호	일시 보호	장기 보호	가정 위탁	기타	소계			
4,108 (72.6)	266 (4.7)	916 (16.2)	163 (2.9)	0 (0.0)	155 (2.7)	1,500 (26.5)	1 (0.1)	48 (0.8)	5,657 (100.0)

### 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아동학대사례로 판정된 5,657건의 사례를 대상으로 한 해 동안 학대행위자에게 취해진 조치 중 마지막 차수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표 19〉에 의하면, 마지막 차수에서 학대행위자에게 가장 많이 취해진 조치는 ‘지속관찰’로 전체 학대행위자의 82.4%인 4,660건에 대하여 지속적인 상담과 교육, 재학대 발생여부에 관한 모니터링이 실시되었다. 학대행위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도 497건으로 전체 사례의 8.8%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학대행위자의 주소지가 불분명하고 신원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와 학대행위자가 학대피해아동과 동거하지 않고 가출하여 소재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한편 학대행위자에 대한 고소·고발 조치는 290건으로 전체의 5.1%로 파악되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학대행위자가 부모일지라도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심각하게 저해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사례의 경우 고소·고발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증거불충분 등으로 처벌이 내려지지 않거나 검찰이나 법원에서 아동학대사례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아동학대사례에 대한 고소·고발조치를 취함에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19〉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단위: 건, %)

지속관찰	고소·고발	타기관의뢰	만나지못함	계
4,660 (82.4)	290 (5.1)	210 (3.7)	497 (8.8)	5,657 (100.0)

#### 다.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결과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고소·고발 조치를 취한 290건의 사례에 대하여 경찰수사, 검찰수사, 법원공판 및 판결 항목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본 자료에서 경찰수사를 진행하고 검찰수사와 법원으로 송치된 사례는 경찰수사의 고소·고발 통계 자료에서 집계하지 않았으며 검찰수사를 거쳐 법원으로 기소된 사례는 검찰수사 통계수치에서 제외하였다.

경찰수사, 검찰수사, 법원공판 및 판결 결과에 대해 <표 20>에서 살펴보면 학대행위자를 고소·고발한 290건 중 경찰수사만 이루어진 사례는 77건(26.6%)으로 파악되었고 검찰수사중인 사례는 총 53건(18.2%)이었다. 또한 검찰수사에서 법원으로 송치된 사례는 총 160건(55.2%)으로 조사되었고, 공판진행 중인 사례는 76건(26.4%), 법원판결을 받아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을 받은 사례가 84건(28.8%)으로 나타났다.

법원판결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보호처분은 12건(4.1%), 형사처분은 69건(23.8%),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을 동시에 처분받은 것은 3건(0.9%)으로 나타나 고소·고발된 아동학대사례가 법원판결을 받을 경우 상대적으로 형사처분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20〉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결과

(단위: 건, %)

고소고발 결과		건 수
경찰수사	수시중	42 (14.5)
	내사종결	35 (12.1)
	소계	77 (26.6)
검찰수사	수시중	21 ( 7.2)
	불기소	21 ( 7.2)
	기소	11 ( 3.8)
	소계	53 (18.2)
법원공판 및 판결	공판진행 중	76 (26.4)
	보호처분	12 ( 4.1)
	형사처분	69 (23.8)
	보호처분+형사처분	3 ( 0.9)
	소계	160 (55.2)
계		290 (100.0)

## 7. 아동학대사례 서비스 제공 현황

아동학대사례를 위한 서비스 제공 실적을 〈표 21〉에서 살펴본 결과 총 387,952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이중 학대피해아동에게 305,270건(78.7%), 학대행위자에게 48,050건(12.4%), 학대피해아동의 부모 또는 가족에게 34,632건(8.9%)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표 21〉 아동학대사례 서비스 제공 현황

(단위: 회, %)

학대피해아동	학대행위자	학대피해아동의 부모 또는 가족	계
305,270 (78.7)	48,050 (12.4)	34,632 (8.9)	387,952 (100.0)

## 8. 특성별 아동학대사례 분석

### 가. 신고의무자 신고사례 판정결과

신고의무자 신고사례 중 아동학대사례판정률은 81.9%(1,876건)에 해당하고, 비신고의무자는 73.9%(3,781건)에 해당하여 신고의무자의 신고사례가 아동학대사례로 판정되는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22〉 신고의무자 신고사례 판정결과

(단위: 건, %)

신고자유형 \ 구분	아동학대사례	잠재위험사례	일반사례	계
신고의무자	1,876 (81.9)	140 (6.1)	274 (12.0)	2,290 (100.0)
비신고의무자	3,781 (73.9)	366 (7.2)	969 (18.9)	5,116 (100.0)
계	5,657 (76.4)	506 (6.8)	1,243 (16.8)	7,406 (100.0)

### 나. 재학대 사례

2010년 재학대 사례는 총 503건(전체 학대피해아동 대비 8.9%)이지만 아동이 두 가지 이상의 학대를 경험한 경우 이를 각각의 학대유형으로 포함시켜 분석한 결과 총 802건으로 집계되었다. 아동학대 유형 중 가장 많은 학대유형은 방임이 286건(35.6%), 정서학대 282건(35.2%), 신체학대 193건(24.1%) 순으로 나타났다.

〈표 23〉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단위: 건, %)

유형	건수
신체학대	193(24.1)
정서학대	282(35.2)
성학대	40( 5.0)
방임	286(35.6)
유기	1( 0.1)
계	802(100.0)

#### 다. 영아 대상 아동학대사례

영아 대상 아동학대사례 학대유형을 <표 24>에서 살펴본 바로는 방임이 376건(55.3%)으로 가장 많았고, 정서학대가 166건(24.4%), 신체학대 118건(17.4%) 순으로 나타났다. 영아 대상 아동학대에서는 두명 중 한명 꼴로 방임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아동학대 유형 분포와는 달리 방임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방임은 영유아기에 있어서 생명을 위협할 만큼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표 24> 영아 대상 아동학대사례 유형

(단위: 건, %)

유형	건수
신체학대	118(17.4)
정서학대	166(24.4)
성 학 대	2( 0.3)
방 임	376(55.3)
유 기	18( 2.6)
계	680(100.0)

#### 라. 다문화가족 학대피해아동 보호율

전체 아동학대사례 총 5,657건 중 다문화가족의 아동학대사례 건수는 243건으로 전체 아동학대사례의 4.3%에 해당한다.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아니지만 다문화가족 학대피해아동 보호율은 1.99%로 나타나 전체 학대피해아동 보호율인 0.57%보다 약 3.5배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25> 다문화가족 학대피해아동 보호율

(단위: 명, 건, %)

다문화가족 아동 총 인구 수* (0~17세)	다문화가족 아동학대사례 건수	학대피해아동 보호율
121,935	243	1.99

\*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조사현황 2010. 1.

## IV. 아동학대 현황분석을 통한 파악한 현안 문제

### 1. 신고율 감소

아동학대개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2007년까지는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07년부터 상담신고 접수 건수 전년 대비 증가율이 10.0% 미만으로 감소하면서 2009, 2010년에는 -2.7%, -1.2%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러한 신고접수 건수의 감소가 실질적으로 아동학대 발생감소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아동학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발견되지 않는 것인지를 신고 접수 건수로만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만0세-17세 추계인구수 대비 아동학대사례 수에 대한 학대피해아동 보호율이 우리나라 0.57%, 미국 10.1%, 호주 6.1%로 우리나라의 학대피해아동 보호율이 낮은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아동학대가 발생하지만 신고비율이 낮다는 측면을 신고율 저하의 원인으로 조금 더 조심스럽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아동학대 발생과 발견율의 차이를 입증하고, 신고율 저하의 근본적인 이유를 아동학대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아동학대 신고포상제 관련 법안이 발의된 바 있는데, 일면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아동학대문제에 사람들의 관심을 촉구한다는 점에서 일면으로는 환영할만하다. 이렇게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고 좀 더 많은 아동들이 학대로부터 조속히 발견될 수 있도록 신고증진방안을 사회적으로 심층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 2. 신고의무자 신고율 부진

우리나라의 신고의무자 아동학대의심사례 접수 건수 비율은 지난 10년 평균 약 30.0% 정도에 이르고 있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기 쉬운 직군에 종사하며 아동을 학대로부터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기 때문에 신고의무자의 신고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갖는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것은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부족, 신변위협에



대한 두려움과 소속된 직장에서의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거부적 반응, 그리고 아동학대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았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제재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미국의 경우 신고의무자 신고율은 58.3%( '09)에 달하며, 교원, 법집행관, 형법/사법관계자, 의료인, 사회복지서비스관련종사자 등이 신고의무자로 규정되어 있다. 신고의무 불이행시 처음에는 약식기소범죄에 해당되나 그 이후에는 3급 경범죄에 해당하여 처벌받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신고의무자 신고율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신고의무자 불이행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 신고의무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등의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개선이 요구된다.

### 3. 학대행위자에 대한 사법적 대응 체계 미약

2010년 아동학대사례 5,657건 중 고소·고발조치건수는 290건(5.1%)이며, 그 중 법원판결을 받은 사례는 160건으로 약 28% 정도에 불과하다. 즉 아동학대사례 중 법원판결에 이르는 사례는 3%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학대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분이 미비한 것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사례가 심각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아동학대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접수받아 조사하게 되는 경우 수사기관이 반드시 아동학대 현장조사 과정에 동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부분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전담하여 현장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현장조사 결과 형사처벌이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고발 조치를 취함으로써 수사기관에 사건을 의뢰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인지하고 처리하는 과정보다 사건처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한계를 가진다.

한편, 서론에 언급한 '서울 광진구 3세 아동 사망사건'에 대한 학대행위자의 형사처분은 매우 가벼운 수준으로 나타나 학대행위자에 대한 엄중하고 실효성 있는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사법적 대응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성인에 대한 대항능력이 전혀 없는 영유아기 아동이 부모의 학대로 인해 사망에까지 이르고 있으나 자신의 아이를 죽인 부모에 대한 양형기준이 매우 낮을 뿐 아니라 부모가 함께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는 둘 중 한사람은 불구속수사가 진행되고 처분도 기소유예 정도에 그치는 수준이다.

따라서 아동학대사건을 신속하고 또한 정확하게 조사하고 조치하기 위해서는 현장조사 과정에 아동학대 수사전담인력(경찰, 검찰)을 구성하여 사건을 처리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아울러서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여 재판하는 전담재판부도 마련하여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전문성 있고 즉각적인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 4. 학대행위자 보호처분 및 친권제한·친권상실 미비

아동학대는 주로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며, 학대행위자는 주양육자인 부모가 83.2%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아울러 아동학대 재신고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13.7%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재학대 방지를 위해서는 학대행위자의 변화를 유도하여 학대 발생 요인을 근본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아동복지법에는 학대행위자의 교정을 위한 상담·수강명령 등 의무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비자발적인 행위자의 경우 재학대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참여를 강제할 수 있는 조치가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학대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친권제한 및 친권상실 절차를 취하기도 하나, 이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제한적이어서 사실상 친권제한과 상실의 판결을 받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이로 인해 때로는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및 보호 등의 과정에서 학대행위자인 친권자의 의사에 반한 결정을 취하는데 제한이 따르기도 한다.

결국, 학대행위자 보호처분 강화를 통한 성행교정 또는 친권자인 학대행위자의 부모로서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상실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으로 학대재발을 예방하기 어려운 바 학대행위자 관련 법제도 개선이 요구되는 바이다.

#### 5. 정확한 학대피해아동 현황 파악을 위한 부처별 데이터베이스 관리 일원화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통계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입력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e-나라지표로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e-나라지표로 관리되는 아동학대 통계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접수된 사례에

한정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되지 않고 수사기관에 신고된 경우는 경찰청을 통해, 그리고 성학대사건으로 원스탑지원센터나 해바라기아동센터에 신고된 경우는 각각의 센터에서 DB가 관리되고 있다. 즉, 보건복지부, 경찰청, 여성가족부 등 각각의 부처를 통해 피해아동 통계가 발표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대한민국 내에서 아동학대 범죄로 인한 피해아동의 현황 파악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아동대상 범죄 당사자인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에 대한 DB관리를 일원화함으로써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할 뿐 아니라 행위자에 대해서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정보망을 마련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

이를 통해 학대행위자에 대한 일원화된 정보 및 통계를 확보하여 학대피해아동 보호와 더불어 학대피해아동의 형제·자매에 대한 보호를 위한 공조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들을 위한 복지적 서비스 제공에 대한 협업도 가능하리라고 사료된다.

## V. 나오며

모든 아동은 부모와 가족으로부터 적절한 양육과 보호를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어떠한 것으로부터도 빼앗길 수 없으며 방해받을 수 없다. 더욱이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이 미약한 아이들에게 행하는 무자비한 학대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

2000년 이후 전국적으로 4만 5천여 명의 아동들을 학대로부터 보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에도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이 여전히 발생하였고, 신고조차 되지 않은 우리 아이들이 학대위험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 는 말처럼 아동을 올바르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 아동학대는 학대피해아동의 전 생애에 걸쳐 심각한 고통과 피해를 주며, 아동뿐 아니라 가족, 지역사회를 피폐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한다. 아동이 학대로부터 보호받고 아동권의 및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 우리 모두의 힘이 모아져야함은 강조할 나위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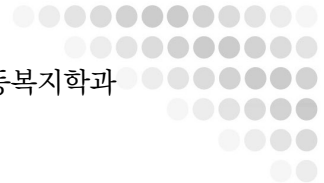
2010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가 아동학대예방사업의 새로운 10년, 더 나아가 100년을 준비하고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져나가는 초석이 되기를 바라며, 본 현황보고서를 바탕으로 아동학대예방사업의 지평이 넓혀지기를 또한 기대한다.



아동보호서비스의 발전방향 모색:  
예방과 치료의 균형적 접근

윤혜미 교수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 아동보호서비스의 발전방향 모색 :

## 예방과 치료의 균형적 접근

윤혜미 교수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 1. 들어가는 글

현대 국가에서 아동의 성장발달과정의 기본적 조건인 안전과 양육환경의 안정성 및 지속성 보장은 가족의 책임을 넘어서 사회전체의 책임으로 부상되었다. 아동을 성장환경의 위협요인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국가개입의 당위성은 인적 자본이론 뿐 아니라 아동의 인권보장이라는 기본적 가치의 문제이기도 하다. 잇단 잔혹한 아동학대 및 유기 스캔들과 UN 아동권리협약 조인 등 몇 가지 국내외적 아동복지환경 변화로 아동보호체계가 공식적으로 가동된 지 만 10년이 지났다. 한국의 아동보호서비스를 되돌아보면 지난 10년 동안의 양적인 팽창과 함께 아동학대현장의 변화, 그리고 축적된 서비스 경험이 말해주는 보호체계의 개선 필요성 등을 관찰할 수 있다.

아동보호서비스는 그동안 양적인 팽창을 이루었다. 2001년 전국 17개소로 시작되었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1년 현재 45개로 증설되었고 아동학대상담원의 수도 129명에서 320명으로 148% 증가하였다.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4,133건에서 9,199건으로 증가, 학대피해아동 보호율도 2001년 0.18%에서 2010년 0.57%로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서비스 제공 건수도 크게 늘었다.<sup>2)</sup> 신고사례의 학대진위여부 판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신고의무자의 신고비율도 2001년 대비 3.3배 증가하였다. 또한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도 꾸준히 진행되어왔다. 아동보호서비스의 매뉴얼 개편,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의 현장 체험, 피해아동 보호와 지원을 위한 보건, 교·보육, 행정기관 및 복지서비스 제공기관들과의 연계 강화, 임상심리치료사의 센터 배치를 통한 치료전문성 증대, 기관평가를 통한 자체 감독기능의 강

2) 학대피해아동보호율은 미국의 경우 10.1% (2009년)이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도 아동 10만명당 1명의 수준임.

화 등이 그것이다.

한편 서비스 건수 및 인력 증강과 현장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보호현장은 늘 변화하는 환경의 도전을 받고 있다. 재신고 및 재학대사례의 증가, 한국인구의 혼성성 증가로 인한 서비스 현장의 다문화 이슈, '신고에 따른 학대판정과 서비스제공' 이라는 현 아동보호서비스의 기본체제로 인한 신고되지 않은 고위험 가정 아동에 대한 접근 제한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보호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드러나는 최적의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는 현재의 아동보호체계상의 문제도 기존 연구에서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0년 아동학대실태조사』에서는 조사결과에 기반하여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증진과 아동학대조기발견 신고체계 구축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의 세 가지를 주 제언으로 제시하였다.<sup>3)</sup>

이 글에서 연구자는 이러한 제언의 타당성에 동의하면서 학대피해아동보호서비스의 목적과 관련해서 현재의 접근방향에 대한 기본적 반성과 함께 미래 발전방향을 고민하고자 한다.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아동보호정책이 발견된 학대피해아동의 치료와 보호라는 지금까지의 사후적 개입 중심에 머무를 것인지, 혹은 학대발생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예방적 차원의 서비스를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현 아동보호전문기관들이 주요사업 중 하나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논제가 전적으로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 중심의 예방에서 나아가 아동학대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집단에 대한 예방사업의 부재에 초점을 맞추어보면 현재 아동보호서비스는 분명 이미 학대피해를 입은 아동과 가정에 대한 서비스 중심이라는 것이 명백하다. 아동보호서비스를 수급할 수 있는 조건은 일단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신고되어야 하고, 아동학대인지 아닌지를 가정조사 등을 통해 판정받아야 서비스가 집중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의 아동보호사업이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구도를 가지고 있어 예방적이기보다는 치료적이고(remediation) 나아가 징벌적(punitive)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접근은 재신고, 재학대 등 반복적인 방임·학대부모의 등장과, 장기적으로 다양한 방면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만성적 다문제가족에 대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에 대한 고민과 연결된다. 이 고민은 아동보호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시행하면서 경험의 축적이 높은 국가들에게서도 있었던 것으로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에는 2010년 현

3) 가족에 의한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증진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가족보존을 위한 재통합·회복 지원, 고위험군 아동 특별관리 지원, 학대행위자 치료 및 처벌(학대행위자의 퇴거 조치 명령 법제화)을 위한 근거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재 Differential Response (DR) 또는 Alternative Response(AR)이 기존의 CPS 체계에 도입되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10년을 맞이한 한국아동보호서비스가 아동학대예방과 학대피해아동의 치료와 보호라는 목표에 보다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서비스의 새로운 모델을 생각해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 제도의 한계점을 정리하고, 특히 예방모델 강화를 위한 근거를 10년간의 학대현황보고를 통해 살펴보고 미국의 DR(AR) 접근의 내용을 참고하여 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 2. 아동의 안전(safety)과 위험(risk), 그리고 아동학대와 방임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에는 안전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양육환경의 보장 및 아동특성에 대한 이해의 네 가지가 필수적이다. 인적자본이론의 관점이든, 혹은 아동의 권리보장의 관점이든 현대국가에서 아동보호는 아동복지의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조기개입을 통한 예방은 대부분의 아동복지서비스의 지향점이기도 하다. 그러면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를 위한 아동보호서비스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

현행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규정한 44개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을 살펴보면 아동학대 신고접수·현장조사·피해아동보호, 피해아동과 가족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과 치료적 개입, 서비스제공 및 연계, 사후관리 등 아동학대사태에 관한 모든 조치와 관리 수행으로 정리되어있다(2010). 현재의 시스템은 아동학대가 누군가에 의해 핫라인으로 신고되어야만 작동하는 것이다. 즉 발생이라기보다는 발견된 아동학대에 대해서 접근한다는 한계점이 있으면서 또한 그 사례가 가정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아동학대로 판정되어야만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 아동학대사태는 반드시 피해자(victim)와 가해자(perpetrator)로 양분된 구도에서 이해되기 때문에 가해사실을 증명하고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를 밝혀 그 정도에 따라 교육·상담 또는 고소·고발하게 되는 징벌적 성격을 갖게 된다. 따라서 현행 제도는 보다 심각한 아동학대사태에 대한 개입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아동의 안전확보가 보다 급박한 경우에 대한 서비스가 중심이다.

현행 제도의 사례개입과정을 보면 초기단계가 바로 이러한 피해의 급박성과 가해-피해의 증명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신고는 일단 아동학대의심사례와 중복신고, 일반상담

사례로 분류된다. 중복신고는 현재 서비스가 진행 중인 사례 등이 중복적으로 신고된 경우를 말하고, 일반상담사례는 아동양육과 훈육상의 문제로 아동학대와 상관없는 경우이다. 아동학대의심사례로 1차 분류된 사례들은 가정조사 등의 사실확인작업과 아동이 처한 위험정도의 판정을 거쳐 피해아동보호사례, 잠재위험사례, 일반사례로 다시 분류된다. 아동보호서비스가 주어지는 것은 피해아동보호사례이며 아동학대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학대발생 가능성이 높은 잠재위험사례, 현장조사결과 아동학대가 아닌 것으로 판정된 일반사례는 일단 주된 서비스 대상에서는 벗어나게 된다. <표 1>은 10년 동안 아동학대의심사례가 스크리닝 결과 어떻게 잠재위험과 일반사례 및 피해아동보호사례로 판정되었는지를 보여준다.

**<표 1> 연도별 사례판정 결과**

(단위: 건, %)

연도	계(건수)	피해아동보호사례	잠재위험사례	일반사례
2001	2606	2105(80.8)	313(12.3)	188(7.2)
2002	2946	2478(84.1)	298(10.1)	170(5.8)
2003	3536	2921(82.6)	343(9.7)	272(7.7)
2004	4880	3891(79.7)	454(8.9)	555(11.4)
2005	5761	4633(80.4)	427(7.4)	701(12.2)
2006	6452	5202(80.6)	397(6.2)	853(13.2)
2007	7083	5581(78.8)	468(6.6)	1034(14.6)
2008	7219	5578(77.3)	491(6.8)	1150(15.9)
2009	7354	5685(77.3)	444(6.0)	1225(16.7)
2010	7406	5617(76.4)	506(6.8)	1243(16.8)

<표 1>을 살펴보면 가정조사 등 조사와 스크리닝을 거친 결과 약 76%~84%가 아동학대 사례로서 피해아동치료와 보호, 가족지원서비스, 가해자 상담 등의 전통적 서비스가 주어졌고 학대가 의심된다고 초기 분류된 신고사례의 16%~24%에 달하는 잠재위험사례나 일반사례는 일단 주 서비스대상에서는 벗어나게 된다. 문제는 이처럼 아동의 안전이나 건강한 발달에 대한 급박한 위험이 없다고 판정된 이 신고된 사례들이 과연 학대나 방임에서 자유롭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신고가 되었다는 것은 일단 아동이나 아동의 가족과 접촉이 있는 누군가가 아동의 안전을 염려했고 신고라고 하는 쉽지 않는 선택을 무릅썼다는 것이다. 이 사례들에서 학대나 방임이 발생하지 않았고 아동에게 위험이 없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이 사례들이 잠재위험이나 일반사례로 분류된 것은 아동이 안전하고 가족상황에 별 문제가 없다는 확신에 근거했다기 보다는 아동의 안전이 당장 위협받는다고 확신할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더 정확한 설명일 것이다. 이 사례의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는 없어도 되는 것일까? 이는 아동보호서비스의 목적을 어디에 두는가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아동보호서비스가 학대피해아동의 치료와 보호에 있는지, 아니면 보다 광범위하게 학대피해아동의 치료와 보호 뿐 아니라 학대와 방임을 예방하고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있는지에 따라 지금까지의 아동보호서비스 방향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Loman(2006)은 아동보호서비스 논의는 아동학대와 방임, 아동의 안전, 그리고 위험(risk)이라는 세 가지 개념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아동학대와 방임이라는 개념은 과거사건의 조사라는 회고적 지향을 보여준다. 신고된 아동학대가 실제로 발생했는가? 아동이 피해를 입었으며 누가 가해자인가? 또는 아동이 책임있는 보호자로부터 지도감독을 받지 못했는가? 그렇다면 아동학대상담원이 학대판정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아동의 안전이라는 개념을 살펴보자. 아동학대상담원은 현 상황과 가까운 미래에 이 아동이 가족 내에서 안전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다. 그러나 아동의 안전이라는 개념은 ‘범죄율이 높은 지역사회’와 같이 보호자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까지 확대될 수 있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한편 위험(risk)이란 과거의 아동학대와 방임이나 미래의 안전과는 관계가 없다. 아동은 과거 학대나 방임이 발생하지 않았고 안전과 관련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은 가정에서도 학대나 방임의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험이란 아동학대나 방임발생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가족의 특성(빈곤여성가구주 가족 등), 가족원과 가족의 상황(빈곤, 중독이나 정신보건 문제 등)을 말하기 때문이다. 위험이란 아동의 안전과 마찬가지로 가족에 대한 예측을 포함하는 예견적 개념이지만 확신할 수 없는, 이러저러한 특성을 가진 가족집단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할 수 있는 통계적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다.

Hussey 등(2005)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적이 있는 805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학대로 판정되어 서비스를 받은 아동과 판정되지 않아 서비스에서 제외된 아동의 행동발달성장에 별 차이가 없었으나 이 두 집단과 한 번도 신고되지 않은 집단 사이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Hussey 등의 결론은 아동의 발달산물에 영향을 주는 것은 신고된 아동이 아동학대와 방임서비스를 받기 위한 기준에 도달했는지가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부적절한 양육이 염려되어 신고되는 상황자체에 있다는 것으로서, 학대사실의 확인과 증거확보가 서비스 제공의

기준이 되는 현행 미국의 아동보호서비스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그간의 경험과 서비스 전달상의 문제점 개선 의견이 반영되어 의원 입법으로 제출되어 있는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그 목적을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아동학대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이익과 권리를 보장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라는 목적이 적시된 것인데, 그렇다면 신고되었으나 정황증거가 부족하거나 급박성이 결여되어 일반사례나 잠재위험사례로 구분된 아동에 대한 서비스의 강화가 신중하게 생각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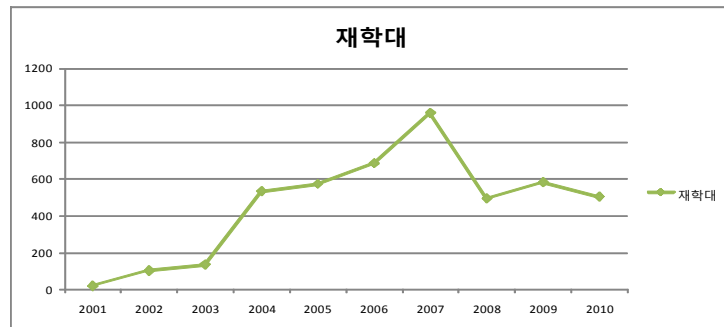
### 3. 학대사례 프로필의 변화와 아동보호체계

#### 1) 아동학대와 방임의 만성화 경향

피해-가해 관계와 아동안전이 위협받는 사례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라는 기존의 신고와 조사 중심 아동보호체계는 반복적으로 의뢰되는 만성적 학대사례에 대한 접근의 한계를 보여준다. 신고되었으나 피해아동보호사례로 판정되지 못한 아동에 대한 서비스 확대라는 예방적 접근으로의 서비스 전환이 필요하다는 연구자의 주장은 지난 10년간 축적된 아동보호 서비스 자료의 관찰에도 근거하고 있다. 학대로 판정되어 서비스를 받았던 아동이 재차 신고되는 재신고사례가 2001년의 20건에서 2010년에는 1,262건으로 63.1배 증가한 것이다. 물론 아동학대신고라는 용어가 생소했던 2001년에는 신고사례도 적었으니 재신고사례도 적었지만, 재신고가 증가하는 것은 절대량을 떠나서 관심을 둘 만한 일이다.

재신고사례가 증가한다는 것은 아동의 안전이 위협받는다 고 지적받은 가정에 여전히 위협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최초 신고에서 학대사례로 판정되어 서비스를 받은 재신고사례 중 재학대사례는 아동이 처한 위협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며, 현재의 자료로는 재신고 사례 중 어느 정도 비중이 잠재위험사례나 일반사례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알기 어렵지만(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0) 서비스에서 제외되었던 사례들에서의 재신고 역시 위협이 상존함을 말해준다. 또 현재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재신고사례의 중복성(몇차례나 재신고되었는지)이 보다 자세히 분류될 수 있다면 재신고사례들이 말해주는 만성적 아동학

대와 방임이라는 이슈에 대한 대처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보호체계에서 특정 부모와 빈번히 마주치게 된다면(서비스가 종료되었음에도 또 다시 학대나 방임 의심사례로 접수되는 일이 잦다면) 이는 현재의 서비스체계의 한계이거나 서비스의 효과성 문제일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특성이 아직은 아니지만 앞으로 만성적 학대사례를 구성하는 요인일까 생각해보자.



〈그림 1〉 신고된 재학대사례의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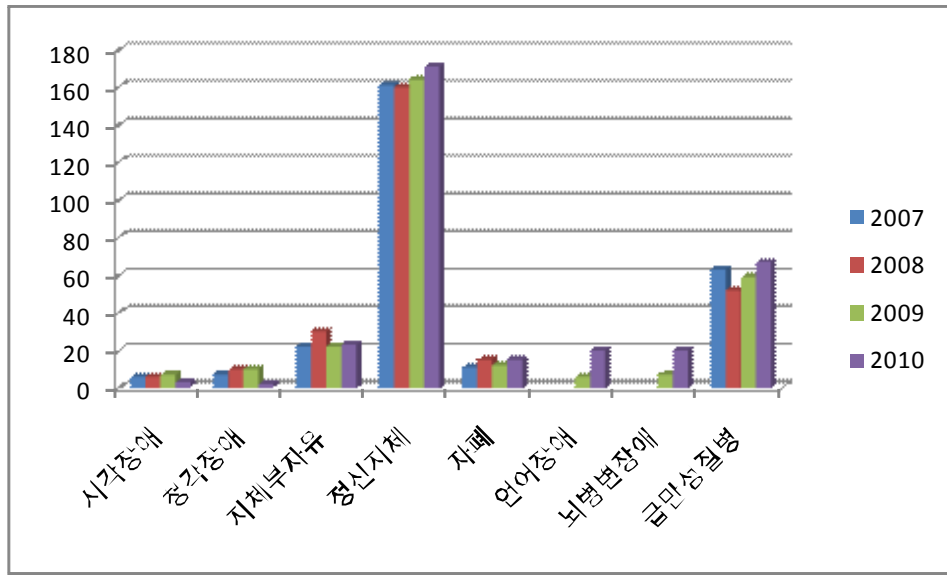
## 2) 빈곤과 방임

신고된 재학대사례 중 정서학대와 방임이 재학대의 주 학대유형이었다는 점(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1)은 주목할 만하다. 아동보호체계에서 조우하는 사례들에는 빈곤이 관련된 경우가 많은데 특히 아동학대의 단일 유형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방임이 빈곤과 연관성이 있다는 지적이 많다(이봉주·김세원, 2005; Brown, Cohen & Johnson, 1998; Chaffin, Wherry, Newlin, Crutchfield & Dynkman, 1996). 또 정서학대 역시 방임과 상관관계가 높는데 Loman(2006)은 실업, 질병 등으로 인한 만성적 빈곤이 가족갈등을 증폭시키고 갈등의 증폭은 우울이나 중독 등 정신보건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생계를 위한 장시간 노동으로 아동을 방임하거나 아동의 발달에 필요한 적절한 반응을 보일 시간과 여유가 없어지며 정신보건상의 문제나 증가된 스트레스가 아동학대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예상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들은 대개 지역사회에서도 고립되어 있으며 최근 수년간의 관찰로는 장애나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아 다문제가정이 대부분이다. 경험적으로도 방임의 재발이 가장 잦다는 결과는 현재의 신고-방임관정-서비스제공이라는 개입의 도식이 자주 아동학대와 방임 혐의를 받는 가족들에게 별로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알려준다. 특히 초기 발달단계에 있는 아동에 대한 방임의 결과는 치명적일 수

있어, 예방적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

### 3) 부모와 아동의 정신보건 문제

아동학대와 방임의 만성화와 연관된 또 다른 요인은 가해부모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가해자의 가해 원인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위에서 지적한 빈곤, 그리고 양육지식의 결핍이지만 부모의 물질중독 및 지적 장애나 정신질환 등 정신보건의 문제 비중도 주목할 만하다는 것이다. Jonson-Reid 등(2010)도 만성적 아동학대를 예측케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보호자의 정신보건문제라고 하였다. 지난 10년간의 아동학대부모들의 특성에서도 ‘중독 및 질환’ 요인의 비율은 2001년 6.3%에서 2010년 14%로 증가하면서 최근에는 몇 년간 12~14%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경계선적 지적 장애, hoarding 장애, 알콜 중독 등의 정신보건 문제를 지닌 가족과의 조우가 늘고 있다. 신고에 따른 가정조사과정에서 상담원들은 이들과는 접근도 어렵고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한 상담원의 우려가 부모에게 전달되거나 이해되지 않아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으며 도와줄 수 있는 가족이나 이웃이 부재하다는 사실도 알게 된다. 결국 아동의 안전과 발달을 위해 아동의 격리보호가 최선이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동의 격리보호와 같은 침해적 서비스가 최선인 것은 아니며 필수적인 것도 아니다. 지적장애 부모들의 경우 격리보호를 통한 아동보호를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동 역시 사회적 경험이 적어 외상적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부모의 우울이나 중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우울은 그 병적 특징 때문에 양육행동이 방임으로 오해되는 경우가 많고, 알콜 중독 등도 학대 또는 방임과의 연관성이 매우 높다. 문제는 이러한 정신보건 관련 조건들은 짧은 시간 동안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아동의 격리보호가 시작되면 영구적으로 귀가하기 어렵게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결국 정신보건과 물질남용의 문제는 문제를 가진 부모가 치료를 지속하면서 사례관리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수용하면서 아동양육을 지원받지 못하면 만성적 아동학대와 방임으로 보고되기 쉽다는 것이다. 만성적 아동학대와 방임의 또 다른 주요 요인 중 하나는 아동의 특성이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보호대상인 아동의 특성으로는 행동 및 적응 특성이 가장 많고, 다음이 정신 및 정서문제와 장애이다. <그림 2>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아동의 특성 중 장애와 정신 및 정서문제의 비율을 분류한 것이다.



〈그림 2〉 피해아동특성:장애 및 정신/정서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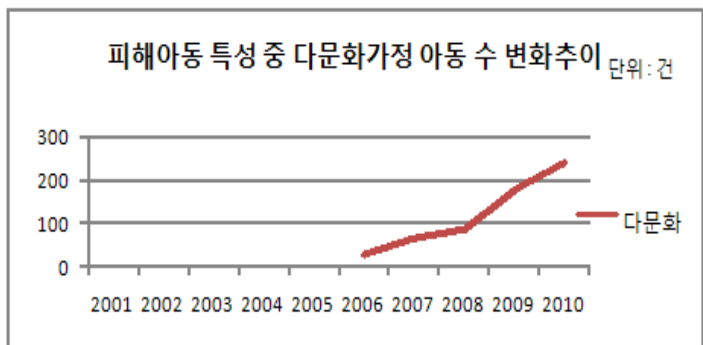
아동과 부모 양쪽 모두에서 정신보건의 문제는 점점 더 그 가시성이 증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접근은 1~2년간의 비교적 단기적인 서비스가 최선인 현 제도에서는 잠재적인 재신고 내지 재학대의 가능성을 예측하게 하는 원인으로 떠오른다. 이들을 지원하고 학대와 방임을 예방하기 위한 보다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모니터링과 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 아동 보호전문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중독과 질환의 종류 및 아동특성 중 장애와 정신·정서문제와 학대발생 및 재신고 등의 관계를 엄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 4) 다문화배경 아동학대피해의 예방

2007년 이후부터 한국사회 인구의 혼성성이 증가하면서 다문화가정 아동의 피해사례도 새로이 보고되고 있다. 10여 년 전부터는 전통적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인한 혼인수급의 불균형과 저출산·고령화가 급진전되는 한국사회의 특성이 맞물려 제3국 여성의 결혼이주가 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혼인 대비 국제결혼 비율은 1990년 1.2%에서 2008년에는 11%로 거의 10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여성결혼이주자의 비율은 2008년 전체 국제결혼의 77.8%에 이르게 되었다(김승권 외, 2010). 여성결혼이주자의

출신국가도 일본과 중국(조선족 포함)에서 2000년대 이후에는 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골,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으로 다양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한국사회의 다문화성도 더욱 다양화될 전망이다(윤혜미, 2011). 결혼이주자의 자녀수도 2006년 25,000명에서 2010년에는 105,502명으로 약 4배 증가하였으며(행정안전부, 2010) 이중 6세 이하의 자녀가 69.7%인 73,572명이며 26.7%는 7~12세로 영유아 및 학령기 아동이 대다수를 점하고 있다. 6세 이하 다문화아동의 국적별 분포로는 중국계가 15,893명, 한국계 중국이 14,945명, 베트남이 22,907명, 필리핀이 7,229명 그리고 일본이 2,736명, 캄보디아가 2,085명으로 보고되었다(행안부, 2010). 다문화가정 아동의 특성은 영유아기 아동의 비율이 높아, 보육시설과 유치원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이들이 초등학교로 진학하면서 초등학교 저학년에서의 학교부적응이나 학업성취의 장애물 등이 관찰되면서 교육계나 사회복지계에서 개입의 필요성을 논하고 있다(이재분·김혜원·오성배, 2009; 전해정, 2008; 금명자, 2006; 오성배, 2007).

다문화가족 증가에 따라 신고된 다문화가족 학대피해아동수도 늘고 있어 (전체 신고 수의 3.2%(2009), 2010년 다문화아동의 학대피해아동보호율이 1.99로 전체 학대피해아동보호율 0.57의 3.5배나 되었다. <그림 3>은 다문화가정 아동수의 변화추이를 보여준다.



〈그림 3〉 학대피해아동 중 다문화가정 아동 수의 변화추이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에는 이주노동자의 자녀들과 극소수이지만 난민자녀들이 있고, 이들은 법적 신분과 상관없이 우리나라가 조인하고 있는 아동권리협약에 의해 보호와 교육권이 인정되고 있다. 이주노동자 가정의 자녀 수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데, 교육과학기술부의 2008년 조사자료에 의하면 1,402명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었고, 2006년 2월에 발표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주노동자 자녀’ 수는 약 9,500명이었다(김정원, 2006: 58). 결혼이주자 가정에 비해 이주노동자 가정, 특히 불법체류자 가정의 아동은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으면서 방임과 학대에 노출되어 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 아동에 대한 지원은 주로 결혼이민자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들이 아동학대피해사례로 접수될 경우, 서비스 지원의 혼란이 예상된다. 아직 보고된 바는 없지만 북한이탈주민가정도 역시 다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북한이탈과정에서 고난을 겪어 심각한 외상적 경험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문화가정 아동에게서는 정서학대와 방임이 주된 학대유형으로 관찰되고 있는데 이는 이주민의 문화적응과 가족 내 아동양육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과 오해, 의사소통의 부족, 그리고 빈곤에 기인한다고 여겨진다. 이들의 경우에는 문제가 계층적 특징으로서의 빈곤과 함께 아동양육방식의 문화적 차이라는 비교적 새로운 쟁점을 가지고 있으며 일부, 외상이라는 정신보건적 특징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 응급적이고 획일적인 대처방식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다문화가정도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므로 한가지 접근전략을 제시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지만 적어도 빈곤과 박탈이라는 보편적인 계층적 위험 요소와 문화적응이라는 특수한 위험을 공유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므로 이주민 지원정책과 연계한 예방적 접근이 요구된다.

#### 4. 치료와 보호에서 예방과 치료, 보호

지금까지 한국의 아동학대와 방임 현황의 관찰을 통해 현행 신고와 조사에 기반한 아동보호체계가 당면한 한계를 살펴보고 예방적 접근 강화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위에서 지적한 재신고사례의 증가, 빈번한 방임, 그리고 재신고 사례에서 보여주는 정신보건문제, 다문화가정 아동의 피해인구로서의 등장 등은 보다 넓은 생태체계적인 그리고 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므로 신고와 조사를 통한 학대판정에 의한 서비스 전략으로서의 문제해결보다는 반복적 재현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서비스 수급자들이 ‘학대부모’, ‘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낙인찍히기 이전에 효과적으로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대안적 접근이 필요하다.

현행 아동보호체계 하에서도 예방노력이 전무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연례보고서에 등장하는 예방노력은 대개 일반국민, 익명의 대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

차원의 예방노력인 1차 예방에 치우쳐 있다. 각급학교학생, 공무원, 교사, 군인, 학부모 등에 대한 아동학대예방교육이나 부모교육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 등도 장기적으로 우리사회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개선에 기여함으로써 아동학대와 방임 발생을 예방할 수는 있겠으나 전문서비스 제공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특성을 활용하여 위험집단이라 불리는 인구계층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예방적 접근(2차 예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대안적 서비스를 대상인 위험집단은 과연 누구인가의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아동학대 위험사정에 대한 Loman(2006)의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2〉 잠재적인 아동학대 위험집단의 특성

저소득	소외와 고립	정서적 취약성		부가적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성적 빈곤</li> <li>- 한부모가정</li> <li>- 낮은 교육/직업수준</li> <li>- 2명 이상의 자녀</li> <li>- 어린 부모</li> <li>(십대 및 이십대 초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정적 소외</li> <li>정서적 소외</li> <li>사회적 고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울</li> <li>외로움 표현</li> <li>절망감 표현</li> </ul>	plu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폭력가해자의 가정내 존재</li> <li>- 부모 약물/알콜중독</li> <li>- 치료안된 정신질환</li> <li>- 아동의 심각한 정서장애와 정신질환</li> <li>- 아동의 발달장애</li> <li>- 아동의 행동문제</li> </ul>

즉, 전통적인 아동학대 발생 위험가정의 요소인 저소득과 소외, 그리고 부모의 정서적 문제에도 부모가 가정폭력이나 중독, 정신보건적 문제가 있거나 아동이 발달 또는 행동장애와 정신보건 문제가 있다면 이 가정은 명백하게 아동학대와 방임의 위험집단이라는 것이다. Loman(2006)과 Loman, Filonow 및 Siegel(2010)은 위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가정이라면 만성적 학대사례로 재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설령 그들이 아동보호체계에 신고되어 아동학대로 판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또는 일반사례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서비스활동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를 인정한다면 이와 같은 위험집단을 체계적으로 screening 하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는데, Loman 등은 현재의 아동보호신고체계에 신고되었으나 학대사례로 판정되지 않아 서비스가 유보된 사례들이 일차적 대상이라고 하였다. 학대로 판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학대나 방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점에서 피해와 가해의 역학관계를 입증할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의미라고 이해해야 하며, 아동보호서비스는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의 아동에 대한 치료와 보호로 역할을 제한하기보다 아동의 안전과 안정성을 지원하고 가족의 역량을 강화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서비스의 시점으로 보는 것이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학대로 판정되지 않은 잠재사례나 일반사례에 대해 피해아동으로 판정된 사례와 동일한 집중적이고 침해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는 없으므로 이들 사례에 대해서는 대안적 또는 차등화된 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1996년경부터 도입하기 시작하여 2010년 현재 미국의 약 36개 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동보호서비스의 차등적 대응(DR: Differential Response)또는 대안적 대응(AR: Alternative Response) 체계가 그것이다. Loman, Filonow 및 Siegel(2010)과 Jonson-Reid 등(2010)은 만성적 학대사례를 예방하거나 학대발생 자체를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이 기존의 CPS 체계 내에 AR 또는 DR의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다음 표는 차등적 접근의 내용을 정리해 본 것이다.

〈표 3〉 아동보호서비스의 전통적 대응과 차등적 대응

기준	전통적 대응	차등적 대응
서비스 대상	• 신고-학대판정된 피해아동과 가족	• 신고되었으나 잠재 또는 일반사례 아동과 가족
서비스 결정기준	• 조사를 통한 피해자-가해자 규명 —mandatory service	• 가족사정(family assessment)에 기반한 voluntary engagement
서비스 목적	• 피해아동의 치료보호/ 가해자 치료 및 처벌	• 아동학대와 방임 예방, 아동성장환경의 개선
서비스 인력	• 아동학대상담원 등 전문인력	• para-professional과 자원봉사자 활용
서비스 내용	• 아동보호(격리보호 포함), 치료, 상담, 가해자 상담, 법적 지원, 가족지원서비스	• 가족지원서비스 및 부모교육, 양육기술지원, 의료적 지원, 재가서비스 등
서비스 장소	• 아동보호전문기관/CAC 등	• 가정기반한 방문서비스
서비스 제공기관	• 아동보호전문기관/CAC, 행형기관, 의료기관 등	•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사회연계기관

Loman, Filonow 및 Siegel(2010)는 오하이오 주의 차등적 대응체계 도입한 결과평가에서 전통적인 대응 외에 그 이전에는 서비스 대상에서 비켜갔던, 즉 신고되었으나 무혐의 판정되었던 위험집단에 대한 서비스 결과, 학대발생비율이 근소하게 줄었으며, 무엇보다 비징벌적이고 낙인감이 없는 접근 방법과 다양한 서비스의 사전적 제공으로 클라이언트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았고 상담원과 클라이언트의 관계가 우호적이었으며 상담원의 갈등도 훨씬 적어 아동보호서비스체계의 고질적 고민인 상담원 소진과 이직률도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실제로 한국상황에서는 아동학대사례판정율이 70%에 육박하는 등 미국과는 다른데 이는 학대아동보호율에서 보여주듯이 한국의 경우는 신고가 적어서 판정율이 높고 미국은 신고가 많아서 판정율이 낮은 경향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소개한 차등적 서비스의 내용이 일부는 한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원가정보호를 하면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예방과 사후적 개입의 상징적 의미는 매우 다르다. Conley와 Berrick(2010)은 가족의 위협 수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누어 차등의 수준을 배가한 캘리포니아 주의 차등적 대응 서비스를 소개하기도 하였다. 즉 차등적 대응의 수준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준비수준과 자원에 따라 조정될 수 있는 것이다.

## 5. 나오는 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를 공적 체계에서 제공해 온 지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한국의 아동보호서비스의 향후 진행방향을 고민해보았다. 신고-조사를 통한 학대판정에 기초한 서비스 제공이 기본적인 틀이며 이 틀을 적용해 온 지난 10년간 많은 아동과 가족이 보호받은 것은 사실이다. 기존의 신고-조사를 통한 접근에도 사법체계와의 공조 부족이나 친권행사제한의 미비, 서비스 자원 부족 등 많은 제약으로 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이고 아동의 성과를 향상시키는데에 한계가 극복되지 못한 점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현 제도의 제약과 문제점은 현재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야 할 것이 아동보호제도의 장기적 발전방향인데, 연구자는 사후개입적이고 징벌적인 현재의 아동보호제도에 예방이라는 사전적이고 가족친화적인 접근을 부가하여 아동의 안전과 양육환경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보다 전진적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것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신고·접수·조사·판정이라는 초기 발견단계의 조사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중시하는지 아니면 지역사회 가족과 아동에 대한 서비스 지원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더 중시하는지와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아동보호체계가 시동되었던 초기단계에는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개입의 당위성에 국민적 합의를 얻어내기 위해서라도 사례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판별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지만 사례가 누적되면서 아동보호사업의 목적은 학대발생과 재학대를 가능한 한 방지하고 피해아동과 가정에 대한 다양한 지원적 접근을 통해 아동이 가능한 한 원가정에서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학대사례 중 43-45% 정도만이 원가정에서 보호되고 격리보호된 아동의 최종 원가정 복귀율이 10%대에 머무는 것은 아동보호서비스가 가해자든 피해아동이든 회복을 위한 충분한 지원과 치료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자성의 소리를 끌어낼 수밖에 없다. 냉정하게 말하면 학대로 판정된 사례에 대한 서비스 수준이 현재는 아동을 위협한 상황에서 데려나와 숙식을 제공하면서 일반 상담과 보호제공, 학습 지원 등 학교 보내고 다친 곳 치료하는 정도이고 정신적 정서적 상흔에 대한 치료의 체계적 계획과 전문가의 지속적 관여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2009년부터 지역거점센터에 1인의 임상심리치료사가 배치되기는 했으나 이 인력이 신규사례 및 전문기관마다 누적된 수많은 사례를 지원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가해자에 대한 상담도 본인이 거부하는 경우 전혀 이루어지지 않거나 전화상담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충분히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이어서 서비스제공자도 부족하고 연계체계 또한 미흡하며 아동이 가지고 있는 행동문제나 장애 때문에 마땅한 보호처를 찾기 어려워 한시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쉼터에 머물다 일정기한이 지나면 다른 시설 등으로 전원초치되면서 사례관리가 어려워지는 문제, 그리고 지적장애나 행동문제 등이 중복된 아동의 경우 18세 이후에도 성인시설로의 전원이 어려워 보호체계가 상실되는 문제 등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플랜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아동보호와 학대방지를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로서 확실한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는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상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최소한 신고접수-가정조사-서비스제공-사후관리까지의 전체과정을 한 사람이 담당하는 체계를 개선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의 아동보호체계가 가족의 자녀양육권, 또는 부모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비취질 수 있는 시행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부모권 제한을 심사하고 조사하는

사람이 가족을 지원하는 역할을 동시에 진행할 때 그 역할의 전환을 클라이언트가 잘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기 때문이다. 대부분 국가의 아동보호체계에서 조사자와 서비스 제공자를 분리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리고 본문에서 논의한 것처럼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여 신고된 사례에 대한 차등적 접근을 개발, 활성화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의 디딤돌을 놓아야 한다.

전문성 확보와 관련한 두 번째 제언은 클라이언트 프로필의 다양화에 따른 상담원의 역량강화이다.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제기되었던 다문화역량은 다문화피해아동이 증가함에 따라 치료와 예방에서 매우 중요한 능력이 될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의 전문성은 정신질환과 중독, 장애 등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다문제적 특성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클라이언트가 보여주는 행동적 심리적 특성이 질병이나 복약, 또는 장애의 특성과 관련된 것인지를 잘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전문성 확보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위탁기관의 직원 순환근무제도의 개선도 매우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되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이제 서비스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등 서비스를 수급한 아동과 가정의 추후 발달성과에 대한 평가작업을 활발히 하여 학대아동보호의 'best practice' model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장 실무자들이 참고 할 수 있는 근거기반 실천의 기초자료들을 제공하는데 노력할 것을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각연도(2001-2010).
- 윤희미(2011). "다문화가정 자녀양육기의 쟁점과 통합적 접근". 차별과 다름.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창립기념 아동복지포럼.
- 윤희미(2010). 충북지역 "아동보호사업 10년: 평가와 발전방향". 아동학대예방사업 10주년 기념 세미나.
- 이봉주(2005). "한국아동보호체계의 딜레마: 신고, 조사와 서비스 기능간의 역할갈등". 아동학대예방센터 개소 5주년 기념 세미나.
- 이봉주·김세원(2005). "아동학대와 방임의 사회구조적 요인:빈곤과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아동권리연구』 . 9(3). 347-373.
- Brown, J., Cohen, P. & Johnson, G.(1988). A longitudinal analysis of risk factors for child maltreatment:findings of 17-year prospective study of officially recorded and self-reported child abuse and neglect. Child Abuse & Neglect, 22. 1065-78.
- Chaffin, M., Wherry,N., Newlin, D., Crutchfield, A. & Dynkman, R.(1996). the abuse dimensions inventory:Initial data on a research measure of abuse severity.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2. 569-589.
- Conley, A. & Berrick, J.D. (2010). Community based child abuse prevention:Outcomes associated with a differential response program in California. Child Maltreatment, 15(4). 282-292.
- Hussey, J., Marshall, J., English, D., Knight, E. L. A., Dubowitz, H. et al.(2005). Defining maltreatment according to substantiation:Distinction without a difference? Child Abuse and Neglect, 29. 479-492
- Jonson-Reid, M., Emery, C.R., Drake, B., & Stahlschmidt, M. J. (2010). Understanding chronically reported families. Child Maltreatment, 15(4). 271-281.
- Loman, A.(2006). Families Frequently Encoutered by Child Protection Services: A Report on Chronic Child Abuse and Neglect. Institute of Applied Research, St.Louis,

Missouri.

Loman, A., Filonow, C.S., and Siegel, G. (2010). Ohio Alternative Response Evaluation Final Report. Institute of Applied Research. St.Louis, Missouri.

McConnell, D., Feldman, M., Aunos, M., & Prasad, N. (2010). Child maltreatment investigations involving parents with cognitive impairments in Canada. *Child Maltreatment*, 16(1), 2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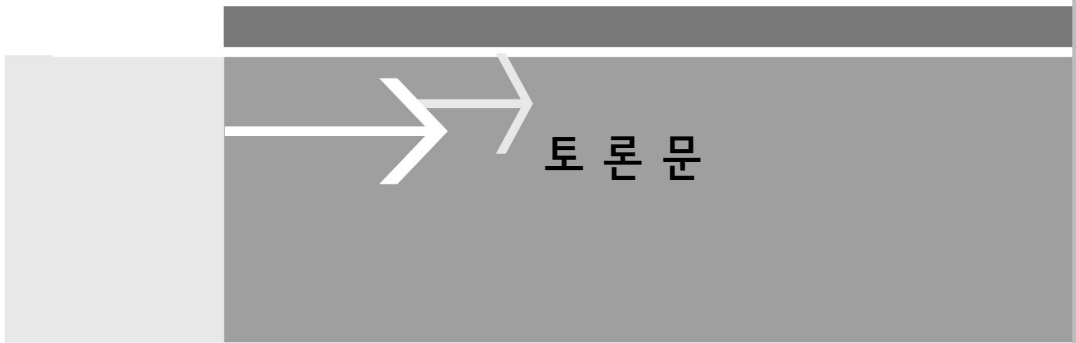
*Memo*





*Mem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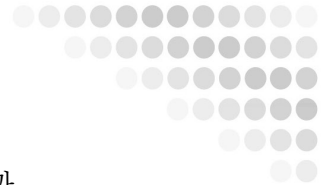
## 토 론 문

**나성웅 과장**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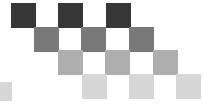
**김정민 판사** 서울가정법원

**황옥경 교수**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조윤영 관장**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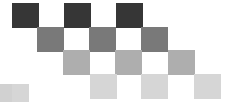
## 아동학대예방정책의 방향

나성웅 과장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Memo*





## 학대아동 예방과 보호 절차의 개선 방향

김정민 판사  
(서울가정법원)

### 1. 들어가며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을 넘어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이들의 생존, 발달, 보호에 관한 기본 권리를 명시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18세 미만 아동의 생명권, 의사표시권, 고문 및 형벌금지, 불법해외이송 및 성적학대금지 등 각종 「아동기본권」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협약가입국은 이를 위해 최대한의 입법, 사법,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우리 아동복지법은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이러한 이념을 기본으로 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전체적인 기반을 마련하여 시행해 오고 있는바,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룬 부분도 있겠지만 지난 10여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미흡하거나 보완할 부분을 찾아 개선해야할 필요성 또한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할 것이다.

이 토론문에서는 현행 학대아동 보호절차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짚어보고, 보다 나은 예방 및 치료 개입의 절차에서의 법원의 역할을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결부하여 제안해 보고자하며, 이는 법원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님을 미리 밝혀둔다.

## 2. 현행 학대아동 보호절차의 문제점

### 가. 아동학대 신고접수 - 조사 - 개입 - 사후관리의 주체 문제

현행 아동학대 사건 처리절차를 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신고를 접수하고부터 현장조사를 하고 학대사태관정을 거쳐 필요한 조치, 사후관리까지 일괄하여 시행하게 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는 아동 문제에 대한 전문가로 구성된 기관이 처음부터 끝까지 개입함으로써 통일성을 기하고 일관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한편으로 보호의 측면과 처벌 또는 제한의 측면이 혼재하는 아동학대사태에 있어 서비스 대상자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자칫 남용의 위험도 있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나.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적 접근 문제

현행 아동학대 사건 처리의 중점은 대체로 학대피해를 입은 것이 명백한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서비스에 맞추어져 있으며, 이것이 물론 매우 중요한 것이기는 하나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잠재위험사례로 판정하는 경우도 사실상은 아동이 피해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거나 적어도 향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도 필요한 조치나 개입을 함으로써 아동학대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면 나아가 청소년 비행을 줄이는 데까지 연결될 수 있으므로 예방 사업의 의미는 생각보다 매우 크다고 하겠다.

### 다. 사법처리의 현실화 문제

현행 절차에 의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사례의 상담이나 신고를 접수하여 현장조사를 할 때 필요한 경우 경찰 협조를 요청하여 처리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아동학대 사례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계존비속이라는 가족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인 아동이 약자의 지위에 서게 되고, 특히 나이가 어린 경우 대항할



힘도 전혀 없는 무방비의 상태에 있게 되는 특성이 있는바, 사안에 따라서는 가해자에 대한 사법절차의 신속한 개입이 요구되거나 적절한 보호처분을 위한 연계가 필요할 수 있다. 이는 선진 각국의 예에서도 그 필요성을 실감할 수 있으며 아동복지법 개정안과도 관련이 있는바, 뒤에서 개선 방향을 언급하기로 한다.

### 3. 법적 절차 정비의 개선 방향

#### 가. 현행 법규정

아동복지법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현재 규정된 학대 아동 보호 관련 조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아동복지법, 같은 법 시행령

- ① 보호조치(제10호) : 자치단체장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등 5가지의 보호조치<sup>4)</sup>를 하여야 한다.
- ② 친권상실 신고의 청구(제12조) : 자치단체장은 친권 남용, 현저한 비행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필요시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상실 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
- ③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보호 등(제25조)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그 업무로서 아동학대 신고의 접수를 받고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를 하며, 학대받은 아동,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사후관리를 수행한다.
- ④ 신고 및 응급조치 의무 등(제26조, 제27조)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일정 직위에 있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4) 1호: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행하게 하는 것, 2호: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3호: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가정위탁하는 것, 4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5호: 약물 및 알콜중독 정서장애 발달장애 성폭력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하여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사법경찰관리는 지체없이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하고 격리 또는 치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금지행위 및 처벌(제29조, 제40조) :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등 11가지 금지행위<sup>5)</sup>를 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한다.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① 신고 및 응급조치(제4조, 제5조) :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상담소 등의 종사자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폭력행위의 제지,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등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임시조치(제8조, 제29조) :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퇴거 등 격리,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sup>6)</sup>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③ 가정보호사건 송치 및 보호처분(제2조, 제9조, 제40조) : 검사는 사건의 성질,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으며,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이 송치되면 접근금지, 보호관찰, 상담위탁, 치료위탁 등 8가지의 보호처분<sup>7)</sup> 결정을 할 수 있다.

- 
- 5) 1호: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2호: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력 등의 학대행위, 3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4호: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5호: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6호: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7호: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호: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호: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10호: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11호: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6) 1호: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 2호: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호: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호: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5호: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7) 1호: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호: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호: 가정폭력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4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다른 사회봉사, 수강명령, 5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6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호: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호: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 나. 현행법에 규정된 제도의 문제점 및 검토

(1) 아동복지법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일응 아동에 대한 폭행 등 학대와 관련한 조치 또는 사법처리를 규정하고 있는바, 대체로 아동복지법은 아동 보호전문기관을 통한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 및 일정한 경우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에의 고소와 처벌을 규율하는 반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일정한 범위의 가족관계를 전제로 하고,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고소를 예상한 후 그 이후 수사기관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한 경우의 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을 통한 가해자 고소 사건 중 일부 또는 피해자인 아동이 고소한 사건이나 수사기관이 인지한 사건 중 일부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지 않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법제도는 실무를 통해 본 사건의 현황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점에서 아동의 적절한 보호와 학대행위자와의 관계 개선과 재발 방지 등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

- ① 먼저 실무상으로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가정보호사건의 피해자는 배우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위 법 규정상 피해자를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인도하는 응급조치를 취할 경우 및 검사의 임시조치 청구 또는 보호사건 송치시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미성년 아동인 경우 실효성이 없을 것이어서 이 또한 성인의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고 하겠다. 한편 위 법에 규정되어 있는 피해자 보호시설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보호시설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이 또한 특히 성인 여성을 위한 시설인 경우가 많은 것이 실상인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위 시설이 피해자인 아동의 보호나 양육에 적합한지 의문이 든다.
- ② 다음으로, 아동학대 사안에 있어 보호처분의 필요성 및 제도의 현실적인 활용 문제가 있다. 현행법상으로도 대부분의 아동학대 사안에 대해 위 법 규정에 따른 가정보호사건으로서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실제로 가해자를 고소하는 단계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지 않고, 그 중에서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되는 경우가 드문 것이 실무의 사정이다. 그렇지만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형사처벌까지는 바람직하지 않더라도 보호처분은 필요한 사안이 많으리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동학대 사안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보호처분이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

- ③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아동에 대한 폭행 등 대부분의 사안이 보호사건으로 규율될 수 있음은 앞서 말한 바와 같다. 그러나 위법 규정은 형법상의 범죄 중 폭행, 상해 등 일부를 가정폭력범죄로 정의하고 특별법에 의해서 가중처벌되는 경우도 가정폭력범죄로 보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바, 아동복지법상에 규정된 신체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등의 금지행위 유형과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어서 해석상의 논란이 있을 수 있을 수 있다. 나아가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 중 방임의 경우 형법에 규정된 각 범죄와는 대응되는 것이 없다고 볼 수도 있는 등 아동복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학대 행위 중 일부는 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포섭되지 못하여 보호처분을 할 근거조차 없게 될 위험도 있다. 통계상 아동에 대한 방임이 학대 행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 신체학대에 못지않게 아동의 안전과 양육에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명확한 법 규정 및 제도의 정비가 절실했다.
- ④ 아동학대 사안의 경우 피해자가 아동인 관계로 부부 사이의 폭력 등에 있어서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달리 양육의 문제가 수반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나 가해자의 피해자로부터의 격리를 넘어 피해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한 조치가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할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예정하는 피해자 보호 조치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며, 아동복지법이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 같으나 학대 사안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별한 관계를 고려하여 동시에 또는 대체로 근접한 시간 내에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 요망되므로 관련법이나 담당 기관의 통일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과 일정한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만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정 구성원이 아닌 자에 의하여서도 학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한계를 보충할 필요가 있다.

## 다. 법률 및 제도에 대한 향후 개선 방향

### (1) 아동학대 사건에 법원의 개입 문제 - 아동복지법상 아동보호사건 처리절차를 신설

아동복지법 개정안에 의하면, 아동복지법상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람을 보호처분의 대상으로 보고 이를 아동보호사건으로 하여 법원이 보호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아동이 성장기에 학대받은 경험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아 청소년기 학교부적응, 우울증, 비행 등의 문제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바, 아동보호사건이 좀 더 조기에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할 계기를 마련해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는 긍정적인 안으로 생각된다.

현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도 보호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 법률로 기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미흡한 점이 있어 실무상으로도 잘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인바, 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통하여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거나 적절한 조치를 현실적으로 취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양육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한 아동복지법상에 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함께 규정하여 활용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보다 효율적인 법체계의 정비 방법으로 생각된다.

### (2) 아동보호사건 처리절차 규정시의 주의점

현재 아동복지법 개정안에 규정된 아동보호사건 절차를 살펴볼 때, 몇 가지 검토할 부분이 발견된다.

- ① 먼저 아동보호사건으로 당해 사안을 법원에 송치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어떤 기관인지 명확하지 않다. 경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를 반드시 예정하는 것인지 아닌지도 불명확해 보인다. 임시조치를 청구하는 주체는 검사로 되어 있는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임시조치의 경우에도 경찰의 현장 조사를 거쳐 검사의 임시조치 청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시까지 시일이 걸리는 점이 난점으로 지적되어 긴급임시조치권 신설 등이 거론되고 있는바, 아동보호사건의 경우에도 학대 발견시의 신속한 조치는 매우 필요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점의 검토를 요한다.
- ② 아동복지법에 아동보호사건으로서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게 되면 위 금지행위 위반이 어떤 것인지 비교적 명확해지는 등 큰 장점을 가지는 것이 명백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현행 가정폭력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아동복지법위반에 대한 보호처분도 예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을 배제하고 아동복지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률 상호간의 조화를 모색하여 상충되거나 해석의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 ③ 한편 아동복지법에 보호처분 및 임시조치를 신설할 경우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점 및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특별한 관계, 되도록이면 쌍방의 관계를 정상화시켜 가정의 울타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보호처분의 내용과는 별도로 알맞은 보호처분 및 임시조치의 내용을 고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4. 맺음말

아동이 중요한 시기에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면 바른 성장을 하지 못하여 청소년 비행으로 연결되고, 일부는 성인범까지 연결됨으로써 우리 사회의 짐이 될 위험성이 크다. 이에 아동의 행복한 생활과 안전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무엇보다 미래를 위한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인바, 아동보호서비스의 앞으로 나아갈 10년을 전망하고 준비하는 이 자리는 매우 뜻 깊은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각 복지사업 분야뿐만 아니라 사법부에서도 분쟁 해결 자체를 넘어 후견적, 치료적 사법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그 미래상을 그리고 있는 시점이어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가장 훌륭한 방안과 제도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 우리나라 아동보호정책, 어디까지 와 있는가?

황옥경 교수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1998년 친부와 계모의 학대로 인해 당시 7세 ‘영훈이가 사망한 사건은 커다란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 사건은 2000년 아동복지법의 전면개정과 더불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탄생시킨 기폭제가 되었다. 우리사회에서 아동학대 금지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는 1930년 8월 15일자 조선일보 사설 ‘아동학대방지령 실시문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동의 학대는 예로부터 있는 것이요, 그것이 실지로 나타나는 방면은 다양하다.  
고로 학대의 ..... 몹시 일을 시키는 것도... 몹시 때리는 것도 사학대의 일태일 것이다.  
아동학대란 기아를 원숭이나 노리개갸티 유용하야 돈을 버는 행위를 확히는 것이다.  
고로 아동학대방지령의 대상으로 하는 바는 이 학대를 금지하지는데 있는 것이다.’

이후에도 우리사회의 아동학대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였다. 1955년 9월 첩에 홀린 이종국이 자신의 자녀를 피골이 상접하도록 학대한 사건이 연일 보도되었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이 비교적 상세하게 신문에서 다루어졌다. 1960년대에는 경제구조의 변화로 인해 아동들이 노동현장에서 착취당하는 기사가 주류를 이루는데, 어린자식 버스표 팔게 하고, 밤낮 술마시고 때리기가 일수인 아빠를 보다 못한 아내가 고발한 사건, 다섯 살 배기를 꼬여 도둑질을 강요한 사건, 자식에게 껌 팔게 한 부모를 즉결에 넘겼다는 기사, ‘손녀 때문에 아들

이 병이 났다는' 점괘를 믿고 4세 손녀를 감금하여 1년 동안 밧줄에 묶어둔 할머니, 전처 딸을 불로 지져 이웃이 고발한 사건, 전처 딸을 핵대로 린치한 사람을 이웃이 고발한 사건 등도 1960년대에 언론에서 보도된 아동학대 사건이다(황옥경, 2003).

수없이 많은 아동이 학대의 희생양이 된 결과 2000년 아동보호제도가 탄생하였다. 아동보호제도가 시행된 지 10여년이 지나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가 45개소로 증가하였고 4만5천여명의 아동이 학대로부터 보호받았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동보호서비스가 자리매김오늘의 주제가 그렇듯 아동보호제도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산적해 있다. 장화정관장님의 현안에 대한 분석, 그리고 윤혜미 교수님의 학대사례 프로파일의 변화와 아동보호체계의 예방과 치료, 보호로의 적극적 전환에 대한 주장에 공감한다. 이에 덧붙여 본 토론자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아동보호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오늘의 토론에서는 아동보호체계 운용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논외로 한다. 아동보호체계의 구조는 결국 전달과정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 1. 아동학대 발견, 신고에만 의존할 것인가?

### ; 잠재된 아동학대 위험군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

신고제에 의존한 현행 아동보호제도는 모든 학대 아동의 발견이 불가능하다. 연구마다 다르게 보고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아동학대 발생율과 학대로 인해 아동보호 서비스를 받은 아동 수에 커다란 격차가 존재한다. 먼저, 아동학대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대한 준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아동보호서비스는 학대가 반드시 발생해야 하고 이 사실이 누군가에 의해 신고되어야 하는 매우 소극적인 제도이다. 발견되지 않고 남겨진 학대아동이 서비스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은 학대아동을 모두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 실제로 사망에 이르는 사건들은 모두 잠재된 위험군에 대한 무관심과 신고제도의 소극성이 가져온 결과이다. 최근 들어 신고율이 감소하고 있다. 법적 징벌 혹은 포상 제도를 도입한다 해도 여전히 남겨진 아동이 있게 된다.

신고제의 한계에 대한 해법으로 위험정도에 따른 차등대응방식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이봉주, 2006), 아동학대와 관련된 기관의 서비스 제공 및 협조 체계 구축 의무를 법제화하고 위험집단에 대한 정기적인 방문서비스를 통해 가족위기 사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황옥경, 2009)도 있다. 오늘 발제해 주신 윤혜미 교수님께서도 잠재적인 학대 위험 집단에 대한 차등적 대응을 제안하셨다. 이 모두 신고제의 한계를 일정부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다. 이는 위험군에 대한 우선적인 그리고 적극적인 아동학대 예방활동이 된다.

잠재된 아동학대 위험군에 대해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

- 아동학대 위험군의 요소를 규정하고 해당 가족에 대해 지방정부 공무원이 Key Worker가 된다. 가족의 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 기록한다.
- 방문서비스를 실시한다. 지방정부의 Key Worker와 함께 가족 방문을 정례화하고 가족위험 사정을 통해 위험 수준을 평가한다. 가정방문서비스를 통해 학대 위험상황에 대한 대응 요령을 숙지한다. 가정방문자는 관련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가정방문에 필요한 자료(양육정보, 안전환경 등)는 정부가 제작 배포한다. 가정방문자는 지역의 공공기관 소속이 되도록 한다.
- 잠재된 위험군에 대한 자료는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관련자간 공유하고 정기적 미팅을 통해 가족의 변화를 평가한다.

## 2. 관련법의 정비가 요구된다.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법의 정비가 시급하다. 이는 그동안 수없이 제기되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간이 된다. 학대 아동의 보호를 위한 관련법에서 반드시 명시되어야 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1) 지방정부의 역할강화이다.

우리나라 아동보호서비스는 민간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 45개소 아동보호전문기관 중 2개소를 제외한 모든 기관이 민간기관에 의해 위탁되고 있다. 이는 보호서비스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러나 아동보호서

비스 개입과정에서 개인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며 여러 법적 절차와 조치가 요구되고, 아동의 삶과 관련한 다양한 영역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민간에 의한 아동보호서비스는 많은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다. 결국 조사과정에서 상담원의 신변위험이나 서비스 전달과정에서 책임과 역할을 강제할 수 있는 추진주체의 부재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다.

영국정부는 빅토리아 크림비 사건의 조사결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였다. 민간과 공공기관에 의한 10여 차례 이상의 서비스 개입은 모두 실패하였는데, 이는 서비스 조정자가 되어야 할 지방정부의 역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다. 아동법 2004(Children's Act 2004)는 아동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자신의 필요를 제공받고 아동의 복지와 보호를 추구하도록 돕는 것은 공적책임이며, 가족을 지원하는 것도 공적기관의 몫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위험상황에 처해있을 때 조사의 책임과 의무도 지방정부에 부과하고 있다. 조사과정을 통해서 아동이 보호받아야 하는 지 혹은 아동의 복지와 안녕을 위해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각 지방정부는 지역아동보호국(Local Safeguarding Children Boards:LSCBs)을 설립하여 매년 아동학대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이는 아동보호의 문제를 정부의 경제지표 산출과 동일한 정도의 중요도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아동보호서비스도 공공의 개입 범위를 확대해야 하며 이렇게 될 경우 지나친 민간의존도를 낮추고 조사과정에서의 신변위험이나 행정권한의 한계 등의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다.

## 2) 연계체계 구축의 명시화이다.

아동보호는 개입될 수 있는 관련기관이 다양하다. 누가 서비스의 주체가가 되고 관련기관의 역할과 의무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는 아동의 성장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행 아동보호서비스 개입기관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기관간의 유기적인 연계체계는 온전히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량으로 남게 된다. 이러한 현실은 해결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수없이 제기되어 왔던 문제로 우리나라 아동보호서비스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성취되어야 한다. 아동복지 영역뿐만 아니라 전 사회복지 서비스영역에서 아동의 상태에 대한 평가 및 고려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테면 빈곤

가정의 주택지원 상담과정에서도 이 가정의 아동의 복리상태를 평가해야 한다. 그  
래야 개입시점을 놓치지 않고 모든 학대 아동을 발견할 수 있다.

### 3) 아동보호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이다.

현행 아동보호서비스는 대상이 제한적이다. 신체, 방임, 정서, 성학대의 네 가지  
범주의 아동학대로 판정될 때 제도적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위험상  
황에 처한 아동보호(child protection)의 개념은 축소된 아동보호입장을 취한다. 이  
경우 학대사실이 확인된 아동에 대한 개입에 초점이 맞추어지기 때문에 정해진 범  
주를 벗어난 아동 즉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에서 성장하는 아동, 또래에 의한 따돌  
림과 폭력, 학교 폭력, 가정폭력 등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아동에게 안전하고 필요한 보살핌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아동보호  
(safeguarding)의 개념으로 아동보호서비스의 범주가 확대되어야 한다.

### 4) 상담원이 조사자와 서비스 제공자로 분리되어야 한다.

현행 아동보호서비스는 상담원의 책임이 막중하다. 그동안 상담원의 과중한 업무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었다. 윤희미교수님의 발제에서도 조사자와 서비스 제공자의 분리를 제안하고  
있다. 신고접수-가정조사-서비스제공-사후관리까지의 전체과정을 한 사람이 담당하는 현 체  
계는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빅토리아 크립비 사건의 결정적 요인 중의 하나도 해당 지  
역의 아동보호 직원의 업무 과다와 전문성 부족이었다.

### 5) 누가 우리나라 아동을 위한 위원회의 기능을 할 것인가?:

아동과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국가기구의 창설이 요구된다.

정부 내 각종의 국가 기구가 있다. 그러나 아동과 가족은 예외이다. 아동과 가족을 위한  
국가기관이 설립되어야 한다. 아동학대 사례 등의 아동과 가족의 권리 침해를 다룰 수 있  
는 기구가 필요하다. 이 기구는 아동과 가족에 대한 정부정책을 평가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며 의회의 새로운 입법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아동정책이 각 지역에서 제대로 실행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빅토리아 크립비 사건이후 영국은 아동  
과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서 아동권리커미셔너라는 국가기구를 창설하였다.

### 3. 빅토리아 크림비 사건은 아동학대에 대한 의회 차원의 조사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영국의 빅토리아 크림비 사건은 영국의 아동보호체계에 획기적인 변화를 촉발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다. 토니블레어는 10개월 동안 최소한 10회의 위기 개입 시점을 놓쳐서 Victorie Climbie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기존의 아동보호 제도를 '실패한 아동보호서비스'로 규정하였다. 결국 이 사건은 잉글랜드아동법 1989를 전면 개정시켰다.

영국빅토리아 크림비 사건이 우리나라 아동보호서비스 체계에 던져주는 교훈을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아래에 지난 2월 있었던 광진구 3세 아동사망사건과 빅토리아 크림비 사건에 대한 두 나라 정부의 대응방식을 간략하게 정리하였는데 이에 두 나라간 현격한 차이를 알 수 있다.

#### 〈서울 광진구 3세 아동 사망사건〉

2011년 2월 보도된 '서울 광진구 3세 아동 사망사건'은 언론에 사건기사가 보도되었다. 최근 법원의 판결에서는 비정한 친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 친모는 두 명의 아이 양육으로 인해 기소유예판정을 받았다.

#### 〈영국 7세아 빅토리아 크림비 사망사건〉

빅토리아크림비는 Ivory Coast 태생으로 프랑스를 거쳐 이모와 이모의 남자친구와 함께 영국으로 이주하였으며 이들에 의한 학대로 2000년 2월 25일 사망하였다. 빅토리아는 유럽시민권으로 11개월 동안 영국에서 생활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3개 법 즉 아동법, 경찰법, 보건서비스법을 근간으로 의회조사단이 구성되었고 무려 4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의회조사보고서가 출간되었다. 조사위원장은 당시 내무부장관과 보건부장관의 임명을 받았다. 4명의 전문 조사관이 조사의 처음부터 종료시까지 조사의 모든 내용을 분석하였다. 조사위원장의 활동을 총괄지원하는 비서가 임명되었고, 전문조사원 1명과 이를 보조하는 직원 2명

이 배치되었다. 이들은 조사시 필요한 자료수집을 도왔다. 법적 지원과 자문을 위해 전담변호사가 배치되었다. 주택분야 위원의 협조가 있었고 관련 단체의 지원도 받았다. 의회조사과정에서 155명 이상의 증인이 채택되었고 외국에 체류 중이던 4명의 증인은 화상연결을 통해 조사받았다.

의회조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1차 의회조사과정은 텔레비전을 통해 전국에 방영되었다. 1단계조사는 빅토리아 크림비 사건의 전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2단계 조사는 향후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1단계 사건발생조사과정에서 빅토리아 생부모는 영국에 와서 조사받기 위한 여행비용 일체를 영국정부로부터 지원받았다. 조사비용은 정부와 관련 단체가 부담하였다. 조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비모임이 있었고, 조사활동에 관심을 표명한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였다. 일반 시민들도 포함되었다. 2001년 1월 빅토리아를 학대하였던 이모와 그녀의 동거남은 살인죄가 적용되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빅토리아의 이모는 3명의 아들이 있다.

조사과정의 모든 내용은 웹사이트에 게시되었고 2001년 9월 30일부터 2002년 9월 30일까지 약 300백만명이 접속하였다. 방문자의 평균 방문시간은 20분이었다. 이는 인터넷 평균 접속시간이 3분인 것과 비교하면 긴 시간이다.

2단계 조사과정에서 2개월 간 5회의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아동을 위한 국가 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는 2004년 아동법에서 영국 아동권리커미셔너(Children's Rights Commissioner)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 1) 의회차원의 조사, 우리도 가능해야 하지 않을까?

아동학대에 대한 의회의 관심은 제도 변화 및 서비스 지원을 결정하는데 중요하다.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발생해도 우리나라 의회에서 진상조사단의 조사가 보고서와 관련법률의 보완으로 이어진 경우는 드물다. 조사활동을 통해 아동보호서비스 체계의 평가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사건조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

## 2) 광범위한 관련자 조사이다.

빅토리아 조사보고 문건에는 관련자의 범주가 상세하게 구분되어 있다. 빅토리아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었던 각 기관의 담당직원들에서부터 지역주민 목격자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이다.

## 3) 시민의 참여이다.

조사과정에 관심있는 시민의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일반대중의 인식을 확대, 유지할 수 있다. 일반대중의 인식은 아동학대 예방 및 발견과도 연결되며 정책모니터링의 주요 참여자가 될 수 있다.

## 4) 정보의 공개이다.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물론 관련 정보를 포괄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

# 4.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홍보는 아동학대 예방의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전국민에게 아동학대 예방 메시지를 나누어주고 쓰레기 수거 비닐 봉투를 각 가정에 보내주며 전국 어디서나 아동학대 관련 소책자를 받아볼 수 있는 그런 홍보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일회성의 행사나 반복적으로 볼 수 없는 홍보 동영상은 그 효과가 미약할 수 밖에 없다. 영국 ITV는 매일 저녁 황금방송시간대에 아동학대 예방캠페인 홍보 동영상을 방영하고 있다.

모든 아동은 자신의 삶이 더 나아지기를 희망하며 이를 위해 안전하고 안정적인 양육을 국가, 지역,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제공받아야 하는 천부적인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 모든 아동에게 ‘모든 것은 괜찮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할 것도 없어’ 라고 말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아동들이 행복하고 미소를 잃지 않으며 우리나라에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더욱더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 아동학대예방과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중심의 역할제고

조윤영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 I. 들어가면서

올해로 아동보호서비스의 하나인 아동학대예방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만 10년의 세월을 맞았다. 2000년 17개소에 불과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2011년 45개소로 양적확대가 되었으며, 2001년 상담신고접수건수가 4,133건에 비해 2010년 신고건수는 9,199건으로 약 2.2배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시작한 아동복지사업의 지역아동센터나 드림스타트사업의 양적확대 등 타 사업영역과 비교해 보면 오히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성장은 더딘감이 없지 않다. 더욱이 언론에 떠들썩하게 보도되는 아동성폭력사건으로 인하여 아동성폭력에 관한 법은 재빨리 개정되고 형량조정, 전자발찌제도, 신상공개, 성폭력신고 의무자의 과태료부과 등의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10년 동안 아동학대예방에 관한 법개정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답답하다.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연평균 8명의 아동이 아동학대로 사망하고 2005년에는 아동 16명이 사망했으며, 수사기관이나 의료기관에 모두 보고되지 않고 실제 학대로 사망한 아동의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됨에도 불구하고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민의 인식은 여전히 낮아 보인다. 현장은 치열한데 여전히 미진해 보이는 정책과 법적제도의 변화가 이 세미나를 통하여 좀 더 활발히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지금까지의 10년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앞으로의 10년의 아동보호서비스의 향후 진행방향을 고민하는 것은 시기적절한 논의라고 생각하며,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의 치료와 보호의 사후 개입중심에서 학대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적 차원의 서비스로 전진적 전환을 제안하신 주제발표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하는 바이다. 덧붙인다고 하면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몇 가지를 첨가하여 논의되기를 기대한다.

## 2. 신고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하는가?

현재의 아동학대보호사업의 시스템은 신고가 되어야만 작동하는 것이며 현장조사를 통하여 아동학대로 판정되어야만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다. 즉 현재의 체계는 아동학대로 확인된 후에 개입이 가능한 소극적 체계여서 아동학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집단에 대한 사전 서비스 제공의 근거가 취약한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이봉주, 2006). 발표자의 주장대로 신고되었지만 아동학대사례판정결과 잠재위험사례나 일반사례가 아동의 안전이나 건강한 발달에 대한 급박한 위험이 없다고 판정되었다고 하여 학대나 방임의 리스크에서 자유롭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지난 10년의 통계를 보면 아동학대의심사례건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01년보다 2010년에 약 2.8배 증가하였으며 아동학대의심사례 건수가 전체 상담신고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높아지고 일반 자녀양육 및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상담 등 직접적으로 아동학대와 관련없는 일반상담 건수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장에서의 접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게 바라는 지역사회의 기대와 아동학대 신고자의 욕구는 학대받는 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적 개입과 학대가정에 대한 더 깊은 심층적인 접근을 바라고 있다. 이들은 학대를 경험한 피해아동들에 대한 학습문제, 학교부적응, 가출과 같은 적응, 행동적 특성과 주의산만, 불안, 성격 및 기질 문제와 같은 정서 정신건강의 특성을 고려한 피해아동의 치료적 개입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주기를 원하고 있다. 학대행위자의 경우에도 자녀양육을 위한 적절한 정보 제공 및 교육의 실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연결,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한 관계망 형성을 포함하여 학대행위자에 대한 심리치료서비스까지 심도 있게 진행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 않은 잠재위험사례나 일반사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다루는 것 보다는 지역사회네트워크 연계를 통하여 복지관이나 건강가정지원센터, 드림스타트 등의 기관을 찾아 사례이관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절차가 아니었으므로 기관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현재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와 인력만으로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학대피해아동의 조사와 치료 서비스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아동보호체계에 신고되어 아동학대로 판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또는 일반사례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서비스활동을 재개할 필요의 당위성에는 충분히 동의를 하지만 이를 충실히 해 내기 위해서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충분한 법적 뒷받침과 시스템의 전환이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를 제도화 하는데 시간이 지체될 경우에는 현행지침을 보완하여 사례를 다룰 수 있는 기관으로 이관하는 방향으로 하되 지역 내 이런 기관을 찾기 어려울 경우 지자체의 사례관리팀으로 의뢰하여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 볼 사항이다.

### 3. 예방서비스에 대한 지역사회의 기존 체계의 활용과 조정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예방서비스에 초점을 두는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아동과 가족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즉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조사의 개념이 아니라 아동과 가족의 욕구를 파악할 수 있는 가족사정을 수행하고 그에 기초하여 사례관리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기아동과 가족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것(2006. 이봉주)이라고 한다. 아동학대현황분석결과 아동학대 사례유형중 방임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방임은 다른 학대 유형보다 포괄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하다. 방임사례는 다른 학대유형보다 환경적 요인에 의한 경우가 많으므로 방임을 예방하고 방임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내의 다양한 체계들과의 통합적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지역사회 내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는 위기가구사례관리를 위한 사회복지통합서비스팀이나 보건소의 방문간호사업, 정신보건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복지관의 사례관리팀, 드림스타트, 알코올상담센터 등의 기관들과의 협약이나 협업 또는 조정을 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사례관리가 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들 기관은 설치된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아 서로의 사례개입의 수준이나 역할, 서비스의 종류 및 서비스중복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되지 못하고 혼란상태에 있는 지역도 있다. 또한 사례조정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며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지가 불분명하다. 지역마다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나 아동위원회가 지역의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가와 지역인사가 참여하고 있으므로 아동학대 관련 정책에 보다 효율적인 예방서비스 지원체계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것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역량에 따라 협의와 조정의 기능이 상당한 수준의 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협의체를 활용하는 것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절차나 내용에 관한 매뉴얼 개발이나 지침이 필요하고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법률로서 하나로 통일되고 통합된 아동보호서비스체계가 절실히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이것이 어렵다고 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게 이러한 조정기능을 부여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아동학대예방 서비스조정위원회(가칭)라는 조정과 협의를 통한 전달체계가 만들어 진다든지 하면 더욱 효과적인 예방서비스가 제공되리라 생각된다.

## 4. 재학대사례의 접근

재신고사례가 증가한다는 것은 아동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라고 지적받은 가정에서 여전히 위협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주장하신 발표자의 의견에 공감을 하는 바이다. 특히 재학대 발생율이 '사례종결 후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라는 시점에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종결된 사례에 대하여 재학대 예방과 가정의 안정유지를 위하여 6개월 사후관리를 한 이후라는 것이다. 따라서 재학대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후관리 기간 연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현실적으로는 매달 신규로 접수되는 사례와 누적사례로 인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의 업무량이 해마다 심각하게 늘어나서 엄청난 심리적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무작정 사후관리 기간만을 연장할 수 없다. 기관에 따라서는 사후관리를 하기 위하여 멘토링프로그램을 연결하여 주 1회나 2회 이상을 꾸준히 방문하여 학습지도 및 관찰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나 이는 거의 자원봉사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후관리에 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후모니터링관리 인력이 확충되는 것이 재학대 예방을 위해 중요하리라 생각이 든다.

## 5. 학대가정의 정신보건의 문제

2010년 통계에 의하면 학대행위자의 특성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특성은 양육태도 및 방법부족으로 31.3%의 분포를 보였고, 다음으로는 사회, 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이 23.7%, 중독 및 질환문제가 14.1%, 그리고 가족, 종교문제가 10.6%순으로 나타났다. 발표자의 주장대로 학대가정의 부모의 물질중독 및 지적 장애, 정신질환의 정신보건의 문제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접근하기가 가장 어렵고 대안을 찾기도 힘든 실정이다. 현장상담원들의

닳두리로는 “우리가 아동학대상담원인지 정신보건센터 직원인지 구분이 안된다 ” 고 할 정도로 경계선 지적 장애, 알코올 중독, 우울증, 성격장애, 인격장애 등의 정신보건문제와 함께 씨름하고 있다. 특히 학대가정의 정신적 문제로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자 할 경우에도 가족이나 친인척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가족들은 나중의 후환이 두려워서 쉽게 동의를 해주지 않고, 아무리 심각한 경우라도 구청장의 강제입원동의를 얻어내는 일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다. 정신보건센터와 보건소와 함께 일을 하더라도 적극적인 협업이 아니라 거의 읍소하면서 끌고 가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고 최후 마지막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만이 남아서 받을 동동거리면서 일을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발표자는 지역사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아동의 격리보호를 한다고 하지만 이런 가정일수록 만성적인 아동학대와 방임의 경우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아동들의 정신장애와 정서적 문제도 만만찮아서 격리를 할 만한 마땅한 곳도 찾을 수가 없는 경우가 더욱 더 많다. 말하자면 오히려 정신지체나 경계선장애, 정서장애아동, 문제행동아동을 받아줄 만한 격리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것을 고맙게 생각해야 할 실정이라는 것이다. 일반양육시설이나 그룹홈에서는 이런 아동들을 치유할 만 한 인력이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언제나 입소에는 난감하다. 오히려 입원이나 입소할 만 한 곳이 없어서, 또는 제대로 보호할 만한 곳을 찾지 못하고 지역사회에 둘 수밖에 없어서 원가정에 두면서 모니터링을 하다가 재신고나 재학대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신보건팀과의 업무적 연계가 필수적이라 생각되고 좀 더 제도적인 보완이 되었으면 한다.

## 6. 예방의 노력

지금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예방사업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알리기 위하여 대국민홍보를 위한 1차 예방활동에 주력을 해 왔던 것은 사실이나 10년이 지난 지금부터는 2차 예방을 위한 노력들도 해 나가고 있다. 2011년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예산을 살펴보니 홍보사업비나 예방교육사업비의 책정예산은 평균 500만원 정도이고 홍보와 교육사업에 한푼도 예산을 지원받지 못한 곳이 10개소나 되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예산지원이 겨우 운영비와 인건비를 박하게 지원할 뿐이고 예방과 교육을 위한 사업비 지원에는 매우 인색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례관리의 예방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고조사와 서비스의 제공이 나누어지는 팀제로 구성하기 위해서도 아동보호전문기관 평균 7명에 불

과한 상담원수를 2배 이상은 확보하여야 하고 상담원 확충을 위한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 현재 의원입원으로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나 예방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7. 나가면서

지역사회에서의 아동학대예방은 단순히 아동학대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역사회에 아동보호를 위한 다양한 보호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아동과 가족에게만 관심을 두고 지역사회의 영향력을 무시하는 협의의 아동보호체계는 아동보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오승환, 2011). 그러한 의미에서 학대피해아동의 치료와 보호라는 사후적개입에서 학대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적 차원의 서비스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주요사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점은 앞으로 향후 10년을 설계해야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지역사회의 공식적 비공식적 자원을 활용하고 아동보호서비스를 조정할 수 있는 역할도 지역사회 내에서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아동보호서비스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법률적인 보완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성향상을 위한 상담원의 확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추가설치등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Memo*





*Memo*





*Memo*





*Memo*





• 아동학대예방사업의 지나온 10년, 나아갈 10년 •

인 쇄 일 : 2011년 5월

발 행 일 : 2011년 5월

발 행 인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장화정

발 행 처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02-558-1391)

인 쇄 : 한빛문화사

